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세입, 정책기획관,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2015. 12.



산업통상자원부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세입·정책기획관·통상정책국·통상협력국·통상진흥국·통상고시소

2015. 12

산업통상자원부

목 차

- i -

4. 통상교섭실	105
----------------	-----

〈일반회계〉

(1) 자유무역협정체결및후속조치	108
(2) 통상분쟁대응	116

정 책 기 획 관

세 입

□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결산	2015예산 (A)	2016예산 (B)	증 감 (B-A)	%
합 계	255,919	198,252	160,357	△37,895	△19.1
【일반회계】	255,919	198,252	160,357	△37,895	△19.1

【일반회계】

관	항	목	2014결산	2015 예산 (A)	2016 예산 (B)	증 감 (B-A)	%
	합	계	255,919	198,252	160,357	△37,895	△19.1
재	산	수입	51,298	32,430	48,593	16,163	49.8
	관	유물 대여료	11,973	10,534	13,588	3,054	29.0
		▪ 토지대여료	10,023	7,022	10,023	3,001	42.7
		▪ 건물대여료	1,950	3,512	3,565	53	1.5
	기	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39,325	21,896	35,005	13,109	59.9
		▪ 기타재산수입	39,325	21,896	35,005	13,109	59.9
경	상	이전수입	204,013	164,836	111,097	△53,739	△32.6
	별	금,몰수금및과태료	103	745	745	-	-
		▪ 과태료	24	145	145	-	-
		▪ 과징금	64	600	600	-	-
	변	상금및위약금	-	10	10	-	-
		▪ 위약금	-	10	10	-	-
	기	타경상이전수입	203,910	164,081	110,342	△53,739	△32.7
		▪ 기타경상이전수입	203,910	164,081	110,342	△53,739	△32.7
재	화	및용역판매수입	47	30	45	15	50
	잡	수입	47	30	45	15	50
		▪ 기타잡수입	47	30	45	15	50
수	입	대체경비수입	562	552	622	70	12.7
	잡	수입	562	552	622	70	12.7
		▪ 기타잡수입	562	552	622	70	12.7

토지대여료(일반회계)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4예산	'15예산 (A)	'16예산 (B)	증 감 (B-A)	
					%
○ 토지대여료	6,460	7,022	10,023	3,001	42.7

□ 세입개요

○ 세입 내용

- 군산·마산·울촌·대불·울산·김제·동해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토지 임대료 및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에게 임대한 토지 임대료

○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25조, 제28조, 제29조 및 제32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0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 세입실적

○ 연도별 세입실적

(백만원, %)

구분	'10		'11		'12		'13		'14		연평균증가율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 토지대여료	3,614	4,345	3,848	4,457	6,000	12,821	5,717	7,251	6,460	10,023	15.6	23.2
(전년대비증가율)	-	-	6.5	1.2	55.9	187.7	△4.7	△43.4	743	2,772		

□ 예산내역

○ 징수전망 및 산출근거

(백만원, %)

구분	금 액	산 출 근 거
'15년	7,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불자유무역지역: 70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8원(㎡당 단가)×859,797.04㎡(임대 예상면적)×12월 ○ 울촌자유무역지역: 67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원(㎡당 단가)×110,000㎡(임대 예상면적)×12월=67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해자유무역지역: 26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4원(㎡당 단가)×65,398㎡(임대 예상면적)×12월=26백만원 ○ 마산자유무역지역: 1,47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원(㎡당 단가)×615,364㎡(임대 예상면적)×12월=1,462백만원 ○ 울산자유무역지역: 61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4원(㎡당 단가)×382,396㎡(임대 예상면적)×12월=615백만원 ○ 김제자유무역지역: 168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원(㎡당 단가)×200,000㎡(임대 예상면적)×12월=168백만원 ○ 군산자유무역지역: 58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원(㎡당 단가)×196,756㎡+50원(50%감면)×552,567㎡+48,777.7㎡×25원}×12월=582백만원 ○ 외국인투자지역 토지임대료: 3,389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 629,442,134 = 468,632 × 3,288 × 43% × 95% × 100% ▪ 월전1 29,279,908 = 52,768 × 1,632 × 85% × 40% × 100% ▪ 월전2 18,053,880 = 46,292 × 3,000 × 100% × 20% × 65% ▪ 대불 658,406,859 = 1,170,57 × 720 × 84% × 93% × 100% ▪ 오창 211,392,109 = 446,269 × 2,292 × 30% × 83% × 83% ▪ 구미 27,724,610 = 329,433 × 1,548 × 13% × 51% × 82% ▪ 구미부품 95,601,609 = 255,469 × 1,512 × 66% × 50% × 75% ▪ 인주 119,860,638 = 159,457 × 1,728 × 58% × 100% × 75% ▪ 사천 546,405,544 = 495,865 × 2,148 × 57% × 100% × 90% ▪ 달성 21,545,142 = 104,187 × 1,332 × 23% × 90% × 75% ▪ 장안1 83,057,423 = 418,156 × 2,796 × 24% × 74% × 40% ▪ 장안2 37,564,810 = 368,977 × 3,636 × 14% × 50% × 40% ▪ 당동 81,350,589 = 239,355 × 4,596 × 25% × 87% × 34% ▪ 지사 304,520,891 = 298,070 × 4,308 × 34% × 93% × 75% ▪ 오성 23,481,484 = 362,331 × 3,876 × 38% × 11% × 40% ▪ 포항부품 10,472,989 = 327,240 × 1,524 × 7% × 40% × 75% ▪ 익산부품 34,754,602 = 320,440 × 1,236 × 30% × 39% × 75% ▪ 창원부품 7,995,243 = 71,368 × 5,412 × 6% × 46% × 75% ▪ 어연 30,418,992 = 60,557 × 3,588 × 35% × 100% × 40% ▪ 추팔 25,304,774 = 88,976 × 2,844 × 25% × 100% × 40% ▪ 포승 15,291,807 = 95,773 × 3,564 × 32% × 35% × 40% ▪ 현곡 90,777,874 = 500,710 × 3,012 × 19% × 88% × 36% ▪ 미음 90,484,700 = 331,909 × 5,268 × 15% × 46% × 75% ▪ EEW 11,545,133 = 52,491 × 1,023 × 43% × 100% × 50% ▪ 날코 171,332,700 = 29,668 × 11,550 × 100% × 100% × 50% ▪ 천안5 11,691,969 = 336,208 × 2,484 × 40% × 5% × 70% ▪ 문막 800,293 = 99,132 × 2,484 × 10% × 5% × 65%
--	--	---

‘16년	10,023	○ 자유무역지역 토지임대료 : 4,400백만원																																																																																																																																																																																																																																																																																																																																																
		<table><tr><th>지역</th><th>임대료(원)</th><th></th><th>예상 면적(㎡)</th><th></th><th>단가(원)</th><th></th><th>개월</th></tr><tr><td>▪ 군산1</td><td>384,862,800</td><td>=</td><td>320,719</td><td>×</td><td>100</td><td>×</td><td>12</td></tr><tr><td>▪ 군산2</td><td>319,669,200</td><td>=</td><td>532,782</td><td>×</td><td>50</td><td>×</td><td>12</td></tr><tr><td>▪ 군산3</td><td>31,564,140</td><td>=</td><td>105,213.8</td><td>×</td><td>25</td><td>×</td><td>12</td></tr><tr><td>▪ 군산4</td><td>8,023,719</td><td>=</td><td>1,288.33</td><td>×</td><td>519</td><td>×</td><td>12</td></tr><tr><td>▪ 김제</td><td>55,540,200</td><td>=</td><td>92,567</td><td>×</td><td>50</td><td>×</td><td>12</td></tr><tr><td>▪ 대불</td><td>714,386,164</td><td>=</td><td>875,473.24</td><td>×</td><td>68</td><td>×</td><td>12</td></tr><tr><td>▪ 동해</td><td>40,020,720</td><td>=</td><td>98,090</td><td>×</td><td>34</td><td>×</td><td>12</td></tr><tr><td>▪ 마산</td><td>2,288,793,240</td><td>=</td><td>615,267</td><td>×</td><td>310</td><td>×</td><td>12</td></tr><tr><td>▪ 울산</td><td>465,102,720</td><td>=</td><td>403,735</td><td>×</td><td>96</td><td>×</td><td>12</td></tr><tr><td>▪ 울춘</td><td>91,800,000</td><td>=</td><td>150,000</td><td>×</td><td>51</td><td>×</td><td>12</td></tr></table>	지역	임대료(원)		예상 면적(㎡)		단가(원)		개월	▪ 군산1	384,862,800	=	320,719	×	100	×	12	▪ 군산2	319,669,200	=	532,782	×	50	×	12	▪ 군산3	31,564,140	=	105,213.8	×	25	×	12	▪ 군산4	8,023,719	=	1,288.33	×	519	×	12	▪ 김제	55,540,200	=	92,567	×	50	×	12	▪ 대불	714,386,164	=	875,473.24	×	68	×	12	▪ 동해	40,020,720	=	98,090	×	34	×	12	▪ 마산	2,288,793,240	=	615,267	×	310	×	12	▪ 울산	465,102,720	=	403,735	×	96	×	12	▪ 울춘	91,800,000	=	150,000	×	51	×	12																																																																																																																																																																																																																																																								
지역	임대료(원)		예상 면적(㎡)		단가(원)		개월																																																																																																																																																																																																																																																																																																																																											
▪ 군산1	384,862,800	=	320,719	×	100	×	12																																																																																																																																																																																																																																																																																																																																											
▪ 군산2	319,669,200	=	532,782	×	50	×	12																																																																																																																																																																																																																																																																																																																																											
▪ 군산3	31,564,140	=	105,213.8	×	25	×	12																																																																																																																																																																																																																																																																																																																																											
▪ 군산4	8,023,719	=	1,288.33	×	519	×	12																																																																																																																																																																																																																																																																																																																																											
▪ 김제	55,540,200	=	92,567	×	50	×	12																																																																																																																																																																																																																																																																																																																																											
▪ 대불	714,386,164	=	875,473.24	×	68	×	12																																																																																																																																																																																																																																																																																																																																											
▪ 동해	40,020,720	=	98,090	×	34	×	12																																																																																																																																																																																																																																																																																																																																											
▪ 마산	2,288,793,240	=	615,267	×	310	×	12																																																																																																																																																																																																																																																																																																																																											
▪ 울산	465,102,720	=	403,735	×	96	×	12																																																																																																																																																																																																																																																																																																																																											
▪ 울춘	91,800,000	=	150,000	×	51	×	12																																																																																																																																																																																																																																																																																																																																											
		○ 외국인투자지역 토지임대료 : 5,623백만원																																																																																																																																																																																																																																																																																																																																																
		<table><tr><th>지역</th><th>임대료</th><th></th><th>임대 면적(㎡)</th><th></th><th>단가 (원)</th><th></th><th>비 감면율</th><th></th><th>입주율</th><th></th><th>지분율</th></tr><tr><td>▪ 천안</td><td>642,030,977</td><td>=</td><td>468,632</td><td>×</td><td>3,288</td><td>×</td><td>43%</td><td>×</td><td>95%</td><td>×</td><td>100%</td></tr><tr><td>▪ 월전1</td><td>29,865,506</td><td>=</td><td>52,768</td><td>×</td><td>1,632</td><td>×</td><td>85%</td><td>×</td><td>40%</td><td>×</td><td>100%</td></tr><tr><td>▪ 월전2</td><td>18,414,958</td><td>=</td><td>46,292</td><td>×</td><td>3,000</td><td>×</td><td>100%</td><td>×</td><td>20%</td><td>×</td><td>65%</td></tr><tr><td>▪ 대불</td><td>671,574,996</td><td>=</td><td>1,170,576</td><td>×</td><td>720</td><td>×</td><td>84%</td><td>×</td><td>93%</td><td>×</td><td>100%</td></tr><tr><td>▪ 오창</td><td>215,619,951</td><td>=</td><td>446,269</td><td>×</td><td>2,292</td><td>×</td><td>30%</td><td>×</td><td>83%</td><td>×</td><td>83%</td></tr><tr><td>▪ 구미</td><td>28,279,102</td><td>=</td><td>329,433</td><td>×</td><td>1,548</td><td>×</td><td>13%</td><td>×</td><td>51%</td><td>×</td><td>82%</td></tr><tr><td>▪ 구미부품</td><td>97,513,641</td><td>=</td><td>255,469</td><td>×</td><td>1,512</td><td>×</td><td>66%</td><td>×</td><td>50%</td><td>×</td><td>75%</td></tr><tr><td>▪ 인주</td><td>122,257,851</td><td>=</td><td>159,457</td><td>×</td><td>1,728</td><td>×</td><td>58%</td><td>×</td><td>100%</td><td>×</td><td>75%</td></tr><tr><td>▪ 사천</td><td>557,333,655</td><td>=</td><td>495,865</td><td>×</td><td>2,148</td><td>×</td><td>57%</td><td>×</td><td>100%</td><td>×</td><td>90%</td></tr><tr><td>▪ 달성</td><td>21,976,045</td><td>=</td><td>104,187</td><td>×</td><td>1,332</td><td>×</td><td>23%</td><td>×</td><td>90%</td><td>×</td><td>75%</td></tr><tr><td>▪ 장안1</td><td>84,718,571</td><td>=</td><td>418,156</td><td>×</td><td>2,796</td><td>×</td><td>24%</td><td>×</td><td>74%</td><td>×</td><td>40%</td></tr><tr><td>▪ 장안2</td><td>38,316,106</td><td>=</td><td>368,977</td><td>×</td><td>3,636</td><td>×</td><td>14%</td><td>×</td><td>50%</td><td>×</td><td>40%</td></tr><tr><td>▪ 당동</td><td>82,977,601</td><td>=</td><td>239,355</td><td>×</td><td>4,596</td><td>×</td><td>25%</td><td>×</td><td>87%</td><td>×</td><td>34%</td></tr><tr><td>▪ 지사</td><td>310,611,309</td><td>=</td><td>298,070</td><td>×</td><td>4,308</td><td>×</td><td>34%</td><td>×</td><td>93%</td><td>×</td><td>75%</td></tr><tr><td>▪ 오성</td><td>23,951,114</td><td>=</td><td>362,331</td><td>×</td><td>3,876</td><td>×</td><td>38%</td><td>×</td><td>11%</td><td>×</td><td>40%</td></tr><tr><td>▪ 포항부품</td><td>10,682,449</td><td>=</td><td>327,240</td><td>×</td><td>1,524</td><td>×</td><td>7%</td><td>×</td><td>40%</td><td>×</td><td>75%</td></tr><tr><td>▪ 익산부품</td><td>35,449,694</td><td>=</td><td>320,440</td><td>×</td><td>1,236</td><td>×</td><td>30%</td><td>×</td><td>39%</td><td>×</td><td>75%</td></tr><tr><td>▪ 창원부품</td><td>8,155,148</td><td>=</td><td>71,368</td><td>×</td><td>5,412</td><td>×</td><td>6%</td><td>×</td><td>46%</td><td>×</td><td>75%</td></tr><tr><td>▪ 어연</td><td>31,027,372</td><td>=</td><td>60,557</td><td>×</td><td>3,588</td><td>×</td><td>35%</td><td>×</td><td>100%</td><td>×</td><td>40%</td></tr><tr><td>▪ 추팔</td><td>25,810,869</td><td>=</td><td>88,976</td><td>×</td><td>2,844</td><td>×</td><td>25%</td><td>×</td><td>100%</td><td>×</td><td>40%</td></tr><tr><td>▪ 포승</td><td>15,597,643</td><td>=</td><td>95,773</td><td>×</td><td>3,564</td><td>×</td><td>32%</td><td>×</td><td>35%</td><td>×</td><td>40%</td></tr><tr><td>▪ 현곡</td><td>92,593,431</td><td>=</td><td>500,710</td><td>×</td><td>3,012</td><td>×</td><td>19%</td><td>×</td><td>88%</td><td>×</td><td>36%</td></tr><tr><td>▪ 미음</td><td>92,294,394</td><td>=</td><td>331,909</td><td>×</td><td>5,268</td><td>×</td><td>15%</td><td>×</td><td>46%</td><td>×</td><td>75%</td></tr><tr><td>▪ EEW</td><td>11,776,036</td><td>=</td><td>52,491</td><td>×</td><td>1,023</td><td>×</td><td>43%</td><td>×</td><td>100%</td><td>×</td><td>50%</td></tr><tr><td>▪ 날코</td><td>174,759,354</td><td>=</td><td>29,668</td><td>×</td><td>11,550</td><td>×</td><td>100%</td><td>×</td><td>100%</td><td>×</td><td>50%</td></tr><tr><td>▪ 천안5</td><td>11,925,808</td><td>=</td><td>336,208</td><td>×</td><td>2,484</td><td>×</td><td>40%</td><td>×</td><td>5%</td><td>×</td><td>70%</td></tr><tr><td>▪ 문막</td><td>816,299</td><td>=</td><td>99,132</td><td>×</td><td>2,484</td><td>×</td><td>10%</td><td>×</td><td>5%</td><td>×</td><td>65%</td></tr></table>	지역	임대료		임대 면적(㎡)		단가 (원)		비 감면율		입주율		지분율	▪ 천안	642,030,977	=	468,632	×	3,288	×	43%	×	95%	×	100%	▪ 월전1	29,865,506	=	52,768	×	1,632	×	85%	×	40%	×	100%	▪ 월전2	18,414,958	=	46,292	×	3,000	×	100%	×	20%	×	65%	▪ 대불	671,574,996	=	1,170,576	×	720	×	84%	×	93%	×	100%	▪ 오창	215,619,951	=	446,269	×	2,292	×	30%	×	83%	×	83%	▪ 구미	28,279,102	=	329,433	×	1,548	×	13%	×	51%	×	82%	▪ 구미부품	97,513,641	=	255,469	×	1,512	×	66%	×	50%	×	75%	▪ 인주	122,257,851	=	159,457	×	1,728	×	58%	×	100%	×	75%	▪ 사천	557,333,655	=	495,865	×	2,148	×	57%	×	100%	×	90%	▪ 달성	21,976,045	=	104,187	×	1,332	×	23%	×	90%	×	75%	▪ 장안1	84,718,571	=	418,156	×	2,796	×	24%	×	74%	×	40%	▪ 장안2	38,316,106	=	368,977	×	3,636	×	14%	×	50%	×	40%	▪ 당동	82,977,601	=	239,355	×	4,596	×	25%	×	87%	×	34%	▪ 지사	310,611,309	=	298,070	×	4,308	×	34%	×	93%	×	75%	▪ 오성	23,951,114	=	362,331	×	3,876	×	38%	×	11%	×	40%	▪ 포항부품	10,682,449	=	327,240	×	1,524	×	7%	×	40%	×	75%	▪ 익산부품	35,449,694	=	320,440	×	1,236	×	30%	×	39%	×	75%	▪ 창원부품	8,155,148	=	71,368	×	5,412	×	6%	×	46%	×	75%	▪ 어연	31,027,372	=	60,557	×	3,588	×	35%	×	100%	×	40%	▪ 추팔	25,810,869	=	88,976	×	2,844	×	25%	×	100%	×	40%	▪ 포승	15,597,643	=	95,773	×	3,564	×	32%	×	35%	×	40%	▪ 현곡	92,593,431	=	500,710	×	3,012	×	19%	×	88%	×	36%	▪ 미음	92,294,394	=	331,909	×	5,268	×	15%	×	46%	×	75%	▪ EEW	11,776,036	=	52,491	×	1,023	×	43%	×	100%	×	50%	▪ 날코	174,759,354	=	29,668	×	11,550	×	100%	×	100%	×	50%	▪ 천안5	11,925,808	=	336,208	×	2,484	×	40%	×	5%	×	70%	▪ 문막	816,299	=	99,132	×	2,484	×	10%	×	5%	×	65%
지역	임대료		임대 면적(㎡)		단가 (원)		비 감면율		입주율		지분율																																																																																																																																																																																																																																																																																																																																							
▪ 천안	642,030,977	=	468,632	×	3,288	×	43%	×	95%	×	100%																																																																																																																																																																																																																																																																																																																																							
▪ 월전1	29,865,506	=	52,768	×	1,632	×	85%	×	40%	×	100%																																																																																																																																																																																																																																																																																																																																							
▪ 월전2	18,414,958	=	46,292	×	3,000	×	100%	×	20%	×	65%																																																																																																																																																																																																																																																																																																																																							
▪ 대불	671,574,996	=	1,170,576	×	720	×	84%	×	93%	×	100%																																																																																																																																																																																																																																																																																																																																							
▪ 오창	215,619,951	=	446,269	×	2,292	×	30%	×	83%	×	83%																																																																																																																																																																																																																																																																																																																																							
▪ 구미	28,279,102	=	329,433	×	1,548	×	13%	×	51%	×	82%																																																																																																																																																																																																																																																																																																																																							
▪ 구미부품	97,513,641	=	255,469	×	1,512	×	66%	×	50%	×	75%																																																																																																																																																																																																																																																																																																																																							
▪ 인주	122,257,851	=	159,457	×	1,728	×	58%	×	100%	×	75%																																																																																																																																																																																																																																																																																																																																							
▪ 사천	557,333,655	=	495,865	×	2,148	×	57%	×	100%	×	90%																																																																																																																																																																																																																																																																																																																																							
▪ 달성	21,976,045	=	104,187	×	1,332	×	23%	×	90%	×	75%																																																																																																																																																																																																																																																																																																																																							
▪ 장안1	84,718,571	=	418,156	×	2,796	×	24%	×	74%	×	40%																																																																																																																																																																																																																																																																																																																																							
▪ 장안2	38,316,106	=	368,977	×	3,636	×	14%	×	50%	×	40%																																																																																																																																																																																																																																																																																																																																							
▪ 당동	82,977,601	=	239,355	×	4,596	×	25%	×	87%	×	34%																																																																																																																																																																																																																																																																																																																																							
▪ 지사	310,611,309	=	298,070	×	4,308	×	34%	×	93%	×	75%																																																																																																																																																																																																																																																																																																																																							
▪ 오성	23,951,114	=	362,331	×	3,876	×	38%	×	11%	×	40%																																																																																																																																																																																																																																																																																																																																							
▪ 포항부품	10,682,449	=	327,240	×	1,524	×	7%	×	40%	×	75%																																																																																																																																																																																																																																																																																																																																							
▪ 익산부품	35,449,694	=	320,440	×	1,236	×	30%	×	39%	×	75%																																																																																																																																																																																																																																																																																																																																							
▪ 창원부품	8,155,148	=	71,368	×	5,412	×	6%	×	46%	×	75%																																																																																																																																																																																																																																																																																																																																							
▪ 어연	31,027,372	=	60,557	×	3,588	×	35%	×	100%	×	40%																																																																																																																																																																																																																																																																																																																																							
▪ 추팔	25,810,869	=	88,976	×	2,844	×	25%	×	100%	×	40%																																																																																																																																																																																																																																																																																																																																							
▪ 포승	15,597,643	=	95,773	×	3,564	×	32%	×	35%	×	40%																																																																																																																																																																																																																																																																																																																																							
▪ 현곡	92,593,431	=	500,710	×	3,012	×	19%	×	88%	×	36%																																																																																																																																																																																																																																																																																																																																							
▪ 미음	92,294,394	=	331,909	×	5,268	×	15%	×	46%	×	75%																																																																																																																																																																																																																																																																																																																																							
▪ EEW	11,776,036	=	52,491	×	1,023	×	43%	×	100%	×	50%																																																																																																																																																																																																																																																																																																																																							
▪ 날코	174,759,354	=	29,668	×	11,550	×	100%	×	100%	×	50%																																																																																																																																																																																																																																																																																																																																							
▪ 천안5	11,925,808	=	336,208	×	2,484	×	40%	×	5%	×	70%																																																																																																																																																																																																																																																																																																																																							
▪ 문막	816,299	=	99,132	×	2,484	×	10%	×	5%	×	65%																																																																																																																																																																																																																																																																																																																																							
‘17년	8,135	○ 외국인투자지역 토지임대료 : 3,591 ▪ 토지 공시지가 상승률 및 입주기업수 증가에 따라 매년 2% 증가 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불자유무역지역 : 7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8원(㎡당 단가) × 863,223㎡(임대 예상면적) × 12월=704백만원 ○ 동해자유무역지역 : 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4원(㎡당 단가)×154,016㎡(임대예상면적)×12월=62백만원 ○ 마산자유무역지역 :2,0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76원/㎡,월 × 615,000㎡ × 12월 = 2,036백만원 ○ 울춘자유무역지역: 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원(㎡당 단가) ×100,000㎡(임대 예상면적) × 12월=61백만원 ○ 김제자유무역지역 : 2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원(㎡당 단가) ×250,000㎡(임대 예상면적) × 12월=210백만원 ○ 울산자유무역지역 : 8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7원(㎡/월) ×403,735.5㎡ ×12월 ×1.0(예상입주율) = 858 ○ 군산자유무역지역: 5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료 면제기업의 임대료 납부 : 50%면제→임대료전액 납부 100%면제→50%면제(563백만원)
‘18년	8,135	○ 상동
‘19년	8,135	○ 상동

○ 금년도 및 중기계획상 특이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세외수입 및 자체수입 증대방안 : 해당사항 없음

건물대여료(일반회계)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4예산	'15예산 (A)	'16예산 (B)	증 감 (B-A)	
					%
○ 건물대여료	2,120	3,512	3,565	53	1.5

□ 세입개요

○ 세입 내용

- 마산, 동해, 대불, 군산 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물류창고 및 청사·업무지원동 임대료

○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28조, 제29조 및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0조

□ 세입실적

○ 연도별 세입실적

(백만원, %)

구분	'10		'11		'12		'13		'14		연평균증가율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 건물대여료	2,029	1,536	2,029	1,460	2,029	1,506	2,084	1,808	2,120	1,950	1.1	6.1
(전년대비증가율)	-	-	-	△4.9	-	31.5	2.7	20	36	142		

□ 예산내역

○ 징수전망 및 산출근거

(백만원, %)

구분	금 액	산 출 근 거
'15년	3,512	○ 대불자유무역지역 : 344백만원 ▪ 표준공장(187백만원, 21,687.04㎡) + 지원업체(57백만원, 1,462.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해자유무역지역 : 20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공장 1동 384원(㎡당평균단가)×4,162㎡(임대예상면적)×12월 = 19백만원 ▪ 표준공장 2동 325원(㎡당평균단가)×6,863㎡(임대예상면적)×12월 = 26백만원 ▪ 표준공장 3동 344원(㎡당평균단가)×12,207㎡(임대예상면적)×12월 = 50백만원 ▪ 청사동 지원시설 1,909원(㎡당)×401㎡(임대예상면적)×12월 = 9백만원 ○ 마산자유무역지역: 1,87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축3호동 : 43,648.47㎡ × 876(평균임대료) × 12개월 = 459백만원 ▪ 신축8호동 : 18,553.84㎡ × 1,019(평균임대료) × 12개월 = 227백만원 ▪ 신축9호동 : 18,553.84㎡ × 1,019(평균임대료) × 12개월 = 227백만원 ▪ 공공 건물 : 257백만원 (기숙사, 공공건물내 지원업체) ○ 울산자유무역지역: 258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공장(경공업동)임대료: 10,957㎡×1,220(예상임대료)×12개월×30%(예상 입주율)×2동 = 60.5백만원 ▪ 표준공장(중공업동)임대료: 8,736㎡×1,345(예상임대료)×12개월×30%(예상 입주율) = 10.5백만원 ▪ 청사동: 1,305㎡×5,080원×10%(부가세)×12개월 =87백만원 ○ 군산자유무역지역 : 83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사동 : 2,456,200원(월금액)×12월×1.1(증감율)=33백만원 ▪ 업무지원동 :6,760,090원(월금액)×12월×1.1(증감율)=89백만원 ▪ 물류동 : 12,827,360원(월금액)×12월=154백만원 ▪ 표준공장 A타입 5개동: 15,264,220원(월금액)×12월×1.1(증감율)=183백만원 ▪ 표준공장 B타입 2개동 : 6,241,480원(월금액)×12월×2개동=75백만원
‘16년	3,5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산자유무역지역: 67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사동 : 1,419원(㎡당평균단가)×2,172㎡×12월=37,000천원 ▪ 업무지원동 : 1,555원(㎡당평균단가)×5,039㎡×12월=94,000천원 ▪ 물류동 : 1,435원(㎡당평균단가)×8,948㎡×12월=154,000천원 ▪ 표준공장 A타입 5개동 : 376(㎡당평균단가)×47,443㎡×12월=214,000천원 ▪ 표준공장 B타입 2개동 : 432(㎡당평균단가)×14,462㎡×12월=75,000천원 ○ 김제자유무역지역 : 15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사동 및 식당동 : 2,678원(㎡당평균단가)×240㎡×12월=7,000천원 ▪ 표준공장 임대료(‘16년 완공예정) : 148,000천원 ○ 대불자유무역지역 : 447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공장 A,D,E,F동 : 704원(㎡당평균단가)×23,468.30㎡×12월= 198,260천원 ▪ 표준공장 B,C동 : 664원(㎡당평균단가)×9,087.50㎡×12월=72,409천원 ▪ 청사동 : 3,510원(㎡당평균단가)×571.83㎡×12월=24,085천원 ▪ 업무지원동 : 2,970원(㎡당평균단가)×1,458.83㎡×12월=51,993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해자유무역지역 : 15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공장 1동: 384원(㎡당평균단가)×4,162㎡×12월 = 19,000천원 ▪ 표준공장 2동: 325원(㎡당평균단가)×6,863㎡×12월 = 26,000천원 ▪ 표준공장 3동: 344원(㎡당평균단가)×12,207㎡×12월 =50,000천원 ▪ 청사동 지원시설 : 1,909원(㎡당)×401㎡×12월 = 9,000천원 ○ 마산자유무역지역 : 1,379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공장3호동 : 850(㎡당평균단가)×46,550㎡×12월=475,000천원 ▪ 표준공장8호동 : 1,066원(㎡당평균단가)×18,910㎡×12월=242,000원 ▪ 표준공장9호동 : 1,145원(㎡당평균단가)×18,263㎡×12월=251,000천원 ▪ 공공건물 : 1,518원(㎡당평균단가)×17,072㎡×12월=311,000천원 ○ 울산자유무역지역 : 68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사동 : 5,086원(㎡당평균단가) × 2057.23㎡×12월=125,000천원 ▪ 표준공장(경공업동) : 1,005원(㎡당평균단가)×27,907㎡×12월=336,000천원 ▪ 표준공장(중공업동) : 1,225원(㎡당평균단가)× 8,319㎡×12월=122,000천원 ○ 울춘자유무역지역 : 7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공장 1동 : 619원(㎡당)×3,114.08㎡×12월=23,000천원
‘17년	5,1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불자유무역지역 : 10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공장(면적: 5,691.01㎡) : 47,290천원 ▪ 청사동 및 업무지원동(면적:1,396.95㎡) : 54,527천원 ○ 동해자유무역지역 : 10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공장 1동 384원(㎡당평균단가)×4,162㎡(임대예상면적)×12월=19백만원 ▪ 표준공장 2동 325원(㎡당평균단가)×6,863㎡(임대예상면적)×12월=26백만원 ▪ 표준공장 3동 344원(㎡당 평균단가)×12,207㎡(임대예상면적)×12월 = 50백만원 ▪ 청사동 지원시설 1,909원(㎡당)×401㎡(임대예상면적)×12월 = 9백만원 ○ 마산자유무역지역 : 2,69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3호동 : 43,430.18㎡ × 876(평균임대료) × 12 = 456백만원 ▪ 표준8호동 : 17,230.33㎡ × 1,049(평균임대료) × 12 = 216백만원 ▪ 표준9호동 : 17,021.95㎡ × 1,049(평균임대료) × 12 = 214백만원 ▪ 신축5개동 : 121,364㎡ × 1,049(평균임대료) × 12 = 1,527백만원 * '13년 임대료 공고기준 8.9호동 평균임대료 ▪ 공공 건물 : 280백만원 (나눔관, 공공건물내 지원업체) ○ 울산자유무역지역 : 1,53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사동 : 5080㎡/월(예상) * 1342.57㎡ * 1.0(예상입주율) * 12월 = 81 ▪ 표준공장(경공업동) : 3565㎡/월(예상) * 27,907㎡ * 1.0(예상입주율) * 12월 = 1,194 ▪ 표준공장(중공업동) : 2580㎡/월(예상) * 8,319㎡ * 1.0(예상입주율) * 12월 = 257 ○ 군산자유무역지역 : 59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사동 : 2,174,680원(월금액)×12월×1.1(증감율)=29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지원동 : 7,976,280원(월금액)×12월×1.1(증감율)=105백만원 ▪ 물류동 : 12,238,190원(월금액)×12월=147백만원 ▪ 표준공장 A타입 5개동: 17,096,310원(월금액)×12월×1.1(증감율)=226백만원 ▪ 표준공장 B타입 2개동 : 7,399,050원(월금액)×12월×2개동=89백만원 <p>○ 김제자유무역지역 : 16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40원(㎡당 임대료) × 25,000㎡ × 12월=162백만원
‘18년	5,188	○ 상동
‘19년	5,188	○ 상동

○ 금년도 및 중기계확상 특이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세외수입 및 자체수입 증대방안 : 해당사항 없음

기타재산수입(일반회계)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4예산	'15예산 (A)	'16예산 (B)	증 감 (B-A)	
					%
○ 기타재산수입	19,634	21,896	35,005	13,109	59.9

□ 세입개요

○ 세입 내용

- 출연금 및 보조금사업 등의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 법적 근거

- 국고금관리법 제7조 및 제14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 국유재산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 세입실적

○ 연도별 세입실적

(백만원, %)

구분	'10		'11		'12		'13		'14		연평균증가율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 기타재산수입	10,161	5,888	20,161	7,967	19,152	27,631	19,635	16,165	19,634	39,325	17.9	60.7
(전년대비증가율)	-	-	98.4	35.3	△5	24.7	2.5	△41.5	-	23,160		

□ 예산내역

○ 징수전망 및 산출근거

(백만원, %)

구분	금 액	산 출 근 거
'15년	21,896	○ 출연·보조금 발생이자: 12,139백만원 ▪ '14년 출연·보조금 예산액 x 최근5년('09~'13) 이자 가중평균반납률 = 2,247,910백만원 x 0.54%≒12,139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RCMS(실시간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9,600백만원○ 국가기술표준원 사업비 정산이자 등 157백만원																																						
'16년	35,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금·출연금 발생이자 반납액 : 35,005백만원▪ 1. 연도별 보조금 및 출연금 사업비 총액 (백만원)<table><tr><th>연도별</th><th>2010</th><th>2011</th><th>2012</th><th>2013</th><th>2014</th><th>2015</th></tr><tr><td>보조금·출연금 사업비총액</td><td>2,514,180</td><td>2,668,408</td><td>2,783,742</td><td>2,070,936</td><td>2,107,194</td><td>2,214,275</td></tr></table>▪ 2. 연도별 이자발생액 (백만원, %)<table><tr><th>연도별</th><th>2012</th><th>2013</th><th>2014</th><th>2015</th><th>2016</th></tr><tr><td>전년도 2년간 사업비 평균</td><td>2,591,294</td><td>2,726,075</td><td>2,427,339</td><td>2,089,065</td><td>2,160,735</td></tr><tr><td>이자수입액 (결산액)</td><td>27,631</td><td>16,165</td><td>39,325</td><td>-</td><td>-</td></tr><tr><td>반납률</td><td>0.0107</td><td>0.0059</td><td>0.0162</td><td>-</td><td>-</td></tr></table>▪ 3. '14-'15년 사업비 평균(2,160,735백만) x '14년도 반납률(0.0162) = 35,004백만원 ※ '14년도부터 RCMS가 전면적용되어 과거('13년 이전)에 비해 이자 반 납액이 증가하였으므로 '14년도 반납률만 적용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보조금·출연금 사업비총액	2,514,180	2,668,408	2,783,742	2,070,936	2,107,194	2,214,275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전년도 2년간 사업비 평균	2,591,294	2,726,075	2,427,339	2,089,065	2,160,735	이자수입액 (결산액)	27,631	16,165	39,325	-	-	반납률	0.0107	0.0059	0.0162	-	-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보조금·출연금 사업비총액	2,514,180	2,668,408	2,783,742	2,070,936	2,107,194	2,214,275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전년도 2년간 사업비 평균	2,591,294	2,726,075	2,427,339	2,089,065	2,160,735																																			
이자수입액 (결산액)	27,631	16,165	39,325	-	-																																			
반납률	0.0107	0.0059	0.0162	-	-																																			
'17년	19,6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금 및 출연금 발생이자: 약 9,685백만원○ RCMS(실시간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이자 : 9,600백만원○ 국가기술표준원 사업비 정산이자 등 350백만원																																						
'18년	19,6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동																																						
'19년	19,6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동																																						

○ 금년도 및 중기계획상 특이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세외수입 및 자체수입 증대방안 : 해당사항 없음

기타경상이전수입(일반회계)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4예산	'15예산 (A)	'16예산 (B)	증 감 (B-A)	%
○ 기타경상이전수입	205,623	164,081	110,342	△53,739	△32.7

□ 세입개요

- 세입 내용
 - 보조금 및 출연금 사업비 정산 잔액
 - 재산수입과 토지매각대금에 대한 연체료
- 법적 근거
 - 국고금관리법 제7조 및 제14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 세입실적

- 연도별 세입실적

(백만원, %)

구분	'10		'11		'12		'13		'14		연평균증가율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 기타경상이전수입	60,557	39,486	60,557	87,522	60,557	99,835	65,399	121,592	205,623	203,910	35.7	50.7
(전년대비증가율)	-	-	-	121.7	-	14.1	8	21.8	140,224	82,318		

□ 예산내역

- 징수전망 및 산출근거

(백만원, %)

구분	금 액	산 출 근 거
'15년	164,0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보조금 정산금: 155,521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년 출연·보조금 예산액 x 최근5년('09~'13) 출연금 기중평균반납률 ○ 국가기술표준원 정산액: 408백만원

		<div>○ 자유무역지역 공동부담금 연체료: 6백만원</div> <div>○ 기타: '08-'09년 산업출연연 초과인건비 반납: 8,146백만원</div> <table><tr><td>'12년</td><td>'13년</td><td>'14년</td><td>'15년</td><td>'16년</td><td>합 계</td></tr><tr><td>2,798</td><td>3,608</td><td>6,674</td><td>8,146</td><td>7,386</td><td>28,612</td></tr></table>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합 계	2,798	3,608	6,674	8,146	7,386	28,612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합 계																																			
2,798	3,608	6,674	8,146	7,386	28,612																																			
'16년	110,342	<div>○ 보조금·출연금 집행잔액 및 정산금: 110,327백만원</div> <div>▪ 1. 연도별 보조금 및 출연금 사업비 총액 (백만원)</div> <table><tr><td>연도별</td><td>2010</td><td>2011</td><td>2012</td><td>2013</td><td>2014</td><td>2015</td></tr><tr><td>보조금·출연금 사업비총액</td><td>2,514,180</td><td>2,668,408</td><td>2,783,742</td><td>2,070,936</td><td>2,107,194</td><td>2,214,275</td></tr></table> <div>▪ 2. 연도별 기타경상이전수입 발생액(집행잔액 및 정산금 반납) (백만원)</div> <table><tr><td>연도별</td><td>2012</td><td>2013</td><td>2014</td><td>2015</td><td>2016</td></tr><tr><td>전년도 2년간 사업비 평균</td><td>2,591,294</td><td>2,726,075</td><td>2,427,339</td><td>2,089,065</td><td>2,160,735</td></tr><tr><td>기타경상이전 수입(결산) ※기술료제외</td><td>99,835</td><td>121,592</td><td>107,327</td><td>-</td><td>-</td></tr><tr><td>반납률</td><td>0.0385</td><td>0.0446</td><td>0.0442</td><td>-</td><td>평균 0.0424</td></tr></table> <div>▪ 3. '16년도 반납 예상액(110,327백만원) = '14-'15년 평균사업비(2,160,735 백만원) × 최근3개년 가중평균 반납률(0.0444) × '15년도 반납률 증가 추세를 고려한 조정계수(15%)</div> <div>※ 기술료 수입이 '15년 1월부로 '산촉기금'으로 이관되어 '14,'15년도에 비하여 기타경상이전수입 크게 감소(1천억원 수준 감소)</div> <div>○ 군산자유무역지역 임대료, 공동부담금 연체료: 12백만원</div> <div>▪ 토지 및 건물대여료, 공동부담금 연체료: 1백만원×12개월 = 12백만원</div> <div>○ 동해자유무역지역 임대료, 공동부담금 연체료: 1백만원</div> <div>▪ 토지, 건물 재산수입(144백만원)×1%(추정비율)</div> <div>▪ 공동부담금(7백만원)×1%(추정비율)</div> <div>○ 마산자유무역지역: 2백만원</div> <div>▪ 임대료(3,445백만원)×1%(국유재산법 요율)×5%(추정비율)=1700천원</div> <div>▪ 공동부담금(400백만원)×3%(국세징수법 요율)×5%(추정비율)=600천원</div>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보조금·출연금 사업비총액	2,514,180	2,668,408	2,783,742	2,070,936	2,107,194	2,214,275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전년도 2년간 사업비 평균	2,591,294	2,726,075	2,427,339	2,089,065	2,160,735	기타경상이전 수입(결산) ※기술료제외	99,835	121,592	107,327	-	-	반납률	0.0385	0.0446	0.0442	-	평균 0.0424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보조금·출연금 사업비총액	2,514,180	2,668,408	2,783,742	2,070,936	2,107,194	2,214,275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전년도 2년간 사업비 평균	2,591,294	2,726,075	2,427,339	2,089,065	2,160,735																																			
기타경상이전 수입(결산) ※기술료제외	99,835	121,592	107,327	-	-																																			
반납률	0.0385	0.0446	0.0442	-	평균 0.0424																																			
'17년	133,652	○ 전년대비 20% 증가 예상																																						
'18년	137,062	○ 전년대비 3% 증가 예상																																						
'19년	140,574	○ 상동																																						

○ 금년도 및 중기계획상 특이사항: '15년부터 기술료 항목이 제외

□ 세외수입 및 자체수입 증대방안: 해당사항 없음

세 출

정책기획관 세출예산현황

(백만원, %)

사업명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감 (B-A)	
					%
<일반회계>	4,476	4,010	4,048	38	0.9
○산업통상자원행정정보시스템구축	3,497	2,877	2,997	120	4.2
○변화관리능력개발	257	400	380	△20	△0.05
○국내외교육훈련	177	202	140	△62	△30.6
○사이버안전센터구축운영	545	531	531	-	-

산업통상자원행정정보시스템구축(계속,정보화)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 감 (B-A)	%
산업통상자원행정정보시스템구축	3,497	2,877	2,997	120	4.2

* 사업코드 : 21-11-0-110-116-7100-7131-501

* 담당자 : 정책기획관(김정환), 정보관리담당관(김미애, 044-203-5550), 주무관(유영신, 5556)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1 ~ 계속
총사업비	-
사업규모	-
지원조건	직접수행, 출연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사업목적

- 업무포털,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고도화와 유지보수 및 실물경제 정책 업무 정보화지원을 통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의 행정·정책업무 수행을 지원
- 정보시스템의 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하여 사이버 침해사고로부터 효과적인 대응 체계 구축

3. '16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 :
('15)1,253 → ('16)1,407백만원(+145)

①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 ('15)694 → ('16)569백만원

◆ 성과관리시스템 기능개선 : 130백만원

(필요성) 성과관리 프로세스(성과계약-성과평가-평가결과 처리 등) 개발 및 성과평가 진행상황 집계표, 부서별·직급별·평가결과 등을 기준으로 성과통계 처리기능 개발 등 기능개선 및 기존 시스템 노후화 등에 따른 시스템 전면 재구축

⇒ 유형(기존 시스템 고도화), 비목(업무용역비)

공정구분	기능점수 단가	기능점수	보정계수				개발원가
			규모	유형	품질	언어	
분석	98,648	280.1	0.650	1.04	1.025	-	19,145,731
설계	124,609	280.1				-	24,184,275
구현	166,145	280.1				1.12	36,115,112
시험	129,801	280.1				1.12	28,214,979
개발금액 = (개발원가 + 이윤(개발원가의 10%)) × 1.1(VAT)							130,268,718

◆ 인터넷 포탈 기능개선 : 80백만원

(필요성) 업무포털 연계기능 강화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업무 포털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업무편이성 확대 제공

⇒ 유형(기존 시스템 고도화), 비목(업무용역비)

공정구분	기능점수 단가	기능점수	보정계수				개발원가
			규모	유형	품질	언어	
분석	98,648	179.7	0.650	1.00	1.025	-	11,810,644
설계	124,609	179.7				-	14,918,828
구현	166,145	179.7				1.12	22,278,739
시험	129,801	179.7				1.12	17,405,294
개발금액 = (개발원가 + 이윤(개발원가의 10%)) × 1.1(VAT)							80,360,341

◆ 소속기관 홈페이지 통합 : 100백만원

(필요성)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정책변화를 반영한 대국민 정보서비스의 통합적인 제공 체계 마련

⇒ 유형(기존 시스템 고도화), 비목(업무용역비)

공정구분	기능점수 단가	기능점수	보정계수				개발원가
			규모	유형	품질	언어	
분석	98,648	226.1	0.650	1.00	1.025	-	14,860,248
설계	124,609	226.1				-	18,770,991
구현	166,145	226.1				1.12	28,031,290
시험	129,801	226.1				1.12	21,899,482
개발금액 = (개발원가 + 이윤(개발원가의 10%)) × 1.1(VAT)							101,110,034

◆ 산업부 모바일서비스 강화 및 Active X 제거 : 181백만원

(필요성) 모바일기기 화면 크기에 따라 화면 노출을 최적화하는 반응형 웹페이지 구축 및 Active X를 제거하여 웹호환성 확보 · 보안강화

※ 행정자치부 행정 · 공공기관 홈페이지 Active X 제거 이행계획 수행

⇒ 유형(기존 시스템 고도화), 비목(업무용역비)

공정구분	기능점수	단가	기능점수	보정계수				개발원가
				규모	유형	품질	언어	
분석	98,648		313.012	0.843	1.00	1.025	-	26,696,570
설계	124,609		313.012				-	33,722,254
구현	166,145		313.012				1.12	50,358,465
시험	129,801		313.012				1.12	39,342,617
개발금액 = (개발원가 + 이윤(개발원가의 10%)) × 1.1(VAT)								181,645,088

◆ 교육관리시스템 기능개선 : 78백만원

(필요성) 교육강좌 관리, 교육 콘텐츠 관리 기능 개선 및 교육 프로세스 지원기능의 고도화를 통한 업무편이성 확대 제공

⇒ 유형(기존 시스템 고도화), 비목(업무용역비)

공정구분	기능점수	단가	기능점수	보정계수				개발원가
				규모	유형	품질	언어	
분석	98,648		167.3	0.650	1	1.025	-	10,994,709
설계	124,609		167.3				-	13,888,165
구현	166,145		167.3				1.2	22,221,020
시험	129,801		167.3				1.2	17,360,201
개발금액 = (개발원가 + 이윤(개발원가의 10%)) × 1.1(VAT)								78,001,556

②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15)539 → ('16)822백만원

◆ 행정정보시스템 운영비 : 595백만원

(필요성) 부내 행정정보시스템 22개, 대국민서비스 정보시스템 8개 운영, Help desk 운영, 시스템 관리 등

⇒ 유형(위탁운영), 비목(위탁사업비)

업무활동		등급별 투입공수(MM)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투입 인력		12	24	18	7
노임단가		376,262	272,075	221,371	189,174
인건비		94,818,024	137,125,800	83,678,238	27,808,578
월평균일수		21.0			
직접인건비합계		343,430,640			
제경비	직접인건비×50%	171,715,320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5%	25,757,298			
운영비		540,903,258			
총 운영비(VAT포함)		594,993,584			

◆ HW/상용 SW 유지보수 : 227백만원

- HW 유지보수(IP 관리서버 외 127종) : 110백만원
 - '13년 이전 : 1,640백만원(도입비) × 5%(유지보수율) = 88백만원
 - '14년 : 219백만원(도입비) × 10%(유지보수율) = 22백만원
- 상용SW 유지보수(자료전송 외 46종) : 117백만원
 - '13년 이전 : 1,002백만원(도입비) × 8%(유지보수율) = 83백만원
 - '14년 : 325백만원(도입비) × 10%(유지보수율) = 33백만원

⇒ 유형(유지보수), 비목(업무용역비)

③ 디지털도서관시스템 유지보수 : ('15)20 → ('16)16백만원

(필요성) 도서관리운영시스템 외 4개 연계프로그램 유지보수 사업, 전자도서관시스템, RFID 운영시스템, 국내학술지 목차정보서비스, 메타 검색프로그램

⇒ 유형(유지보수), 비목(업무용역비)

유지보수 항목	금액	합 계
도서관리운영시스템	10백만원	16백만원 (도입비 115×14%)
RFID운영시스템		
전자도서관시스템	3백만원	
국내 학술지 목차정보서비스	3백만원	
메타 검색프로그램		

○ 실물경제 정책업무 정보화 지원 :

(‘15)1,240 → (‘16요구)1,120백만원(△120)

① 재정집행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 (‘15)219 → (‘16)280백만원
(필요성)

- 산업부 출연·민간보조금 실집행기관의 재정집행 데이터를 연계하여 CLEAN 시스템에 집계함으로써 재원의 통합관리 실현
- 기재부 d-Brain 시스템과의 연계운동을 통한 국가 재정관리 표준화 선도

◆ 응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200백만원

⇒ 유형(유지보수), 비목(일반법령출연금)

구 분	내 역	금 액
응용프로그램 (SW)유지 보수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정비 : 176백만원(고급기술자 1명 5M/M, 초급 기술자 1명 12M/M, 제경비 60%, 기술료 10%, 부가세 10%) 변동비(기능개선) : 20백만원(기능점수 80점) 직접경비 : 4백만원 ※ 고정비 및 변동비 산정에 의한 방식으로 계산	200,000,000
합 계		200,000,000

◆ 하드웨어 및 패키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 51백만원

⇒ 유형(유지보수), 비목(일반법령출연금)

장비명	도입비	유지보수비
Sun M5000 등 서버 2식 SecuwayGate100B 보안장비 1식	358,267,500	28,000,000
Tibero Enterprise 등 솔루션 11식	259,500,000	20,000,000
기관연계용 보안장비(VPN) 12식	36,000,000	3,000,000
합 계	653,767,500	51,000,000

◆ 하드웨어 도입 : 9백만원

⇒ 유형(기존시스템 고도화), 비목(일반법령출연금)

장비명	도입비
기관연계용 보안장비(VPN) 3식 도입	9,000,000

◆ CLEAN시스템 운영비 : 20백만원

⇒ 유형(유지보수), 비목(일반법령출연금)

- 업무관련 회의 : 20천원×10명×20회 : 4백만원
- 공동운영기관 워크숍 개최 : 80천원× 200명×1회 : 16백만원

② 원자재상시경보통제시스템(WACS) 유지보수 : ('15)100 → ('16)100백만원
(필요성)

- 국제 원자재 시장을 상시적으로 관찰·분석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운용, 주요 16개 품목별 상시경보시스템 운용, 산업원자재 지수 운용
- 원자재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동향을 분석하며,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경보시스템을 운용함으로써 시장변화에 신속히 대처

◆ 개발SW 유지보수(모니터링시스템, 경보시스템, 산업원자재지수 : 26백만원

- '16년 : 190백만원(도입비) × 13.7%(유지보수율) = 26백만원

⇒ 유형(유지보수), 비목(업무용역비)

◆ 상용SW 유지보수(OracleLinux 및 OracleRDBMS11GR2 라이선스 업데이트) : 5백만원

- '16년 : 13백만원(도입비) × 38.5%(유지보수율) = 5백만원

⇒ 유형(유지보수), 비목(업무용역비)

◆ HW 유지보수(DB보관센터 이용료, 서버운영 및 기술지원료) : 4백만원

- '16년 : 12백만원(도입비) × 33.3%(유지보수율) = 4백만원

⇒ 유형(유지보수), 비목(업무용역비)

◆ 데이터 제공 및 분석 : 65백만원

- '16년 : 홈페이지(외부용) 가격정보(9백만원), 업무포탈(내부용) 가격정보(10백만원), 업무포탈(내부용) 뉴스분석정보(25백만원), 모니터링시스템 유지보수(8백만원), 기타 13백만원

⇒ 유형(유지보수), 비목(업무용역비)

③ 광업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 ('15)186 → ('16)200백만원

(필요성) 현재 운영 중인 기존 온라인민원발급서비스에 더하여 민원 신청 기능을 구축함으로써 대민 서비스의 편리함과 위상 제고

* 온라인 민원 발급 외 민원 신청 창구가 이원화 되어 민원인들의 불편이 지속되었음

- 수시로 요구되는 원부의 민원에 대한 수정 요청에 대응할 수 없어 DB를 직접 수정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해 관리기능을 고도화하여 민원에 즉가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광업권 통합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관련 업무지원, 온라인 민원 발급 서비스 이용 민원에 대한 신속한 응대를 위해 중급 이상 기술자의 상주가 반드시 필요

◆ 시스템 고도화(기능개선) : 38백만원

- 온라인민원신청 기능, 원부관리기능 개선

⇒ 유형(기존 시스템 고도화), 비목(업무용역비)

공정구분	기능점수 단가	기능점수		보정계수				개발원가
				규모	형태	품질	언어	
분석	98,648	신규	98.9	0.65	1.00	1.075	-	6,817,206
설계	124,609	재개발					-	8,611,276
구현	166,145	재개발 보정					0.8	9,185,343
시험	129,801	총점수	98.9				0.8	7,176,061
개발금액 = (개발원가 + 이윤(개발원가의 10%)) × 1.1(VAT)								38,465,762

◆ 운영비 및 유지보수 : 162백만원

- 개발SW 유지보수 : 88백만원

☞ 679백만원('09~'15년 도입비)×13%(유지보수율) = 88백만원

⇒ 유형(유지보수), 비목(업무용역비)

- 상용SW 유지보수(Report 툴 외 4종) : 14 백만원

☞ 123백만원('09~'15년 도입비)×11.4%(유지보수율) = 14백만원

⇒ 유형(유지보수), 비목(업무용역비)

- 위탁운영 : 60백만원

⇒ 유형(위탁운영), 비목(위탁사업비)

업무활동		등급별 투입공수(MM)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투입 인력		0	0	0	0	12
노임단가		408,995	376,262	272,075	221,371	189,174
인건비						47,671,848
월평균일수		21				
직접인건비합계		47,671,848				
제경비	직접인건비×10%	4,767,185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5%	2,621,952				
운영비		55,060,984				
총 운영비(VAT포함)		60,567,083				

④ 통상정보자료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 : ('15)500 → ('16)500백만원

- '14년 재외공관 등과 통상관련 문서(대외비 이상)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통상정보자료관리시스템 구축
- 同 시스템의 안전성과 가용성을 높이고 장애발생에 따른 업무 서비스의 중단을 최소화하여 중요업무에 대한 안정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토록 지속적인 시스템 고도화 필요
- 시스템에 대한 중단 없는 행정지원, 적극적인 장애 예방 및 대응 활동,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시스템 유지를 위해 비밀시스템 이용 9개 기관 통합유지보수 실시

◆ VPN 이중화 구성 : 147백만원

⇒ 유형(기존 시스템 고도화), 비목(자산취득비)

구 분	내 역	금 액
VPN	2EA(SBC,송수신)×2,850만원	57백만원
L4 스위치	3EA×3,000만원	90백만원

◆ 통상정보자료관리시스템 운영유지보수 : 353백만원

- 상용SW 유지보수(웹서비스관리툴, WAS외 19종) : 50백만원

☞ '15년 : 710백만원(도입비) × 7%(유지보수율) = 50백만원

⇒ 유형(유지보수), 비목(업무용역비)

- HW 유지보수(DB Server, 백업서버외 20종) : 68백만원
 ☞ '15년 : 976백만원(도입비) × 7%(유지보수율) = 68백만원
 ⇒ 유형(유지보수), 비목(업무용역비)
- 운영비 : 235백만원
 ⇒ 유형(위탁운영), 비목(위탁사업비)

구 분		소요금액(원)	비 고
유통 센터	• 상주인력 (중급1, 고급3)	261,474,1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사업관리(12개월) • 응용App기능 수정
	- 제경비(110%)	287,621,611	
	- 기술료(20%)	109,819,161	
	- 부가세(VAT)	65,891,496	
	- 계	724,806,460	
	소 계	80,534,051	전체금액÷9개기관
기관	• 상주인력 (중급 1)		
	- 직접인건비	55,785,492	
	- 제경비	61,364,041	
	- 기술료	23,429,907	
	- 부가세(VAT)	14,057,944	
	소 계	154,637,384	
합 계		235,171,435	

⑤ 비관세장벽 이력관리시스템 : ('15)0 → ('16)40백만원

- 정보입수에서 비관세장벽 완화·해소를 위한 최종 단계까지 해외 비관세 장벽 일괄 지원 체계 마련 필요
- 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해외 비관세 장벽 대응을 위한 정부 부처의 후속조치 DB의 안정적 운영에 따른 대응이력의 체계적 관리 및 점검, 부처간 원활한 정보공유 등 협업 대응 가능
-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 및 정보시스템의 기능변경, 추가, 보완, 폐기, 사용방법의 개선, 문서 보완 등의 정보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제반 활동 수행

⇒ 유형(위탁운영·유지보수), 비목(위탁사업비)

NO	구 분(담당)	등급	단가(M/M)	인원	투입MM	공급금액
1	PM(사업관리)	중급	4,648,791	1	1	4,648,791
2	프로그램개선/ 유지보수지원/ HelpDesk지원/ 인프라지원	초급	3,972,654	1	3.5	13,904,289
직접인건비		투입인력 (4.5 M/M)				18,553,080
제 경 비		직접인건비 * 65%적용				12,059,502
기 술 료		(직접인건비+ 제경비) * 19%				5,816,391
부가가치세		(직접인건비+ 제경비 + 기술료) * 10%				3,642,897
총합계(VAT포함)						40,071,869
비 고		※2014년도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 적용 ※월 평균 투입공수 (PM 1.8일, 개발자 6일)				

○ 정보보호체계 구축 :

(‘15)384 → (‘16)470백만원(+86)

① 정보보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310백만원

- 통합 보안솔루션(침입방지 IPS) 노후방지 교체(‘09 초기도입)
- 소속기관 망분리 추진(11개 기관 중 7개 기관)

⇒ 유형(기존 시스템 고도화), 비목(자산취득비)

항목	내역	금액
침입방지 IPS	4EA(인터넷망,업무망) × 35백만원	140백만원
망분리 추진	7개 기관 × 24.3백만원	170백만원
합 계		310백만원

② 백신 구입 : 50백만원

- 부내 PC 및 정보시스템 서버 보호용 보안프로그램 구입 및 License 유지

⇒ 유형(기존 시스템 고도화), 비목(자산취득비)

항목	내역	금액
백신	2050EA(PC) × 2만원(V3)	41백만원
	29EA(서버) × 32만원(V3)	9백만원

③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점검시스템 도입 : 60백만원

- 개인정보노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부내 및 소관 공공기관(40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
- ⇒ 유형(신규시스템 구축), 비목(자산취득비)

항목	내역	금액
모니터링 솔루션	1EA × 50백만원	50백만원
H/W	1EA(외부망) × 10백만원	10백만원
합 계		60백만원

④ 업무망 패치관리시스템 도입 : 50백만원

- 사이버위기에 실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백신·OS 업데이트 등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패치관리 시스템을 도입(업무망 우선 도입)
- ⇒ 유형(신규시스템 구축), 비목(자산취득비)

항목	내역	금액
패치관리시스템	1EA(업무망) × 50백만원	50백만원
합 계		5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
 - 부내 행정정보시스템(업무포털 등)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과 기능 고도화를 통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의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
 -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대국민서비스 제고
- 실물경제 정책업무 정보화 지원
 - CLEAN 시스템, 광업정보시스템 등 정책업무 수행에 활용되는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능 고도화
- 정보보호체계 구축
 - 다양한 보안솔루션(방화벽, 침입탐지, 개인정보보호 암호화, 내부 IP관리 등)을 실시간으로 통합·분석하여 사이버 침해 사고시 효과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감 (B-A)	%
☐ 산업통상자원행정정보시스템구축	3,497	2877	2997	120	4.2
▪ 행정정보시스템고도화 및 유지보수	1764	1253	1407	154	12.3
▪ 실물경제 정책업무 정보화지원	1425	1240	1120	△120	△9.7
▪ 정보보호체계 구축	308	384	470	86	22.4
☐ 비목	3497	2877	2997	120	4.2
▪ 위탁사업비(210-15)	-	-	930	930	순증
▪ 업무용역비(260-01)	2417	1877	1170	△707	△37.7
▪ 민간경상보조(320-01)	35	35	-	△35	순감
▪ 일반법령출연금(350-01)	256	219	280	61	27.9
▪ 자산취득비(430-01)	789	746	617	△129	△17.3

4. 중기재정 소요전망('15~'19)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의 원활한 행정·정책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기능 고도화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5	28.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12.53) ▪ 실물경제 정책업무 정보화지원(12.40) ▪ 정보보호체계(3.84)
'16	2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14.07) ▪ 실물경제 정책업무 정보화지원(11.20) ▪ 정보보호체계(4.70)
'17	2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14.07) ▪ 실물경제 정책업무 정보화지원(11.20) ▪ 정보보호체계(4.70)
'18	2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14.07) ▪ 실물경제 정책업무 정보화지원(11.20) ▪ 정보보호체계(4.70)
'19	2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14.07) ▪ 실물경제 정책업무 정보화지원(11.20) ▪ 정보보호체계(4.70)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전자정부법 제30조, 제52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1조, 제24조,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6조
-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 추진경위

- 'e-산자부' 선언('00)
- 산자부 중장기정보화추진전략 수립('01)
- 산업자원 지식행정체제 확대 중장기정보화추진계획 수립('03)
- 산업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05)
- 산업자원 데이터웨어하우스 정보전략계획 수립('06)
- 산업자원부 정보기술아키텍처적용 기본계획 수립('07)
- 지식경제부 정보화전략 수립('08)
- 중장기 정보화계획 수립('12)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산업통상자원행정 정보시스템구축	33	33	32	29	29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2년 이월(125백만원) : '개인정보접속기록시스템', '통합성과관리 시스템', '멀티미디어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UX', 'MI' 사업기간 미종료로 이월 발생

- '13년 이월(405백만원) : 통상정보자료관리시스템구축, 업무자료 분류체계 자동화프로그램개발 사업 등이 보안시스템 업무협의 및 공개경쟁절차 준수에 인해 사업기간 미종료로 이월 발생
- '13년 불용(105백만원) : 예산절감액 및 '13년 지식경제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통합유지보수사업 등 낙찰차액
- '14년 이월(2백만원) : 디지털도서관운영유지보수사업 미종료로 이월 발생
- '14년 불용(65백만원) :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 사업 등 낙찰차액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2년	33	0.53	-	33	32	1.25	0.04
	()	()	()	()	()	()	()
'13년	33	1.25	7.97	42	36	4.05	1.43
	()	()	()	()	()	()	()
'14년	31.59	4.05	-	35.64	34.97	0.02	0.65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2년 결산 검토보고서(산업위 지적사항)
 - 사업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경쟁방식으로 집행 필요
 - (후속조치) 보안사유 등 부득이한 경우 이외의 사업은 전면적으로 일반경쟁방식으로 추진
- '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14회계년도 사업기준) 결과
 - 산업통상자원행정정보시스템구축(세부사업) 내 “신외국인투자 통계시스템(내역사업)” 즉시 폐지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 해당없음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없음

변화관리능력개발(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 감 (B-A)	%
변화관리능력개발	257	400	380	△20	△0.05

* 사업코드 : 21 - 11 - 00 - 110 - 116 - 7100 - 7132 - 303

* 담당자 : 정책기획관(김정환), 창조행정담당관(박덕열, 044-203-5530), 주무관(정용수, 044-203-5538)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5~계속
총사업비	-
사업규모	-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2. 사업목적

- 산업통상자원부 및 협력기관의 변화관리역량 강화와 산업·통상·자원 분야 변화관리과제추진 및 변화관리능력 개발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에 적합한 프로그램 운영
- 변화관리 교육-학습-연구체계 구축으로 변화-쇄신의 체질화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창조적 조직 문화 정착
- 유관기관 역량 강화를 통한 안정적 공공서비스 제공 및 성과 향상을 위해 유관기관 임·직원에게 대한 평가 및 교육 필요
-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선제적 갈등대응시스템을 확립

3. '16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변화관리 및 혁신교육 : 0.9억원

○ 즐겁고 활력 있게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사업: 4,475만원

- 자기개발 프로그램 운영(리더십, 대인관계, 문화, 건강 강좌 등)

* 자기개발 강좌 2,400만원 = 200만원×12회

* 선배에게 듣는 생활의 지혜 55만원 = 55만원×5회

* 저자와의 만남 1200만원 = 200만원×6회

- 각계 저명인사 초청 소직원 대상 교양 강연회 개최

* 600만원 = 100만원 × 6회

○ 창의적인 정책생산을 위한 여건 조성사업: 3,340만원

- 부내 크로스미팅 지원 : 540만원

* 540만원 = 30만원 x 3팀 6회

- 국내외 변화관리 모범 기관·기업 등 연수 : 1,900만원

* 국내연수 500만원 = 50만원×10명

* 해외연수 1,400만원 = 140만원×10명

-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 900만원

* 900만원 = (위원회 참석수당 600만원(20만원×30명)+장소임대료 및 회의준비 등 300만원)

○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포상 : 1,000만원

- 분기별 우수부서 : 880만원

* 880만원 = 55만원 x 4개부서 x 4회

- 올해의 산업통상자원인 : 120만원

* 포상금 : 100만원 = 30만원 x 2명 + 20만원 x 2명

* 상패제작 : 10만원 x 2명

- 변화관리 우수부서 · 우수자 포상 90만원
 - (부서) 과원 평균 마일리지가 높은 1개과 (30만원)
 - (개인) 마일리지 합산 우수자 3인(30/20/10만원)
- 정부 3.0, 공공기관 등 지원 95만원 (자문료 등)
- ② 유관기관 역량평가 과제개발 : 0.42억원
 - 역량평가과제 개발 : 42백만원
 - * 평가과제 1개 set 개발비 21백만원 * 2개 Set = 42백만원
(set당 4개 세부평가과제로 구성)
- ③ 규제심사 및 갈등관리 지원 : 2.48억원
 - 자체규제심사위원회 및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 5,600만원
 - 규제심사위원회(횟수 및 참석율은 '14년 기준) : 4,680만원
 - * (회의) 14명×15회×25만원×0.8(참석율) = 4,200만원
 - * (회의장 임차료) 30만원×16회 = 480만원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 920만원
 - * (대면회의) 10명×4회×25만원×0.8(참석율) = 800만원
 - * (회의장 임차료) 30만원×4회 = 120만원
 - 규제개혁 교육 및 갈등관리 교육 : 300만원
 -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브라운백 미팅 : 300만원
 - * 75만원(강사료 30만원 + 도시락구입비용 45만원) × 4회 = 300만원
 - 규제개혁 대표사례 등 홍보물 제작 : 1,380만원
 - 산업, 에너지 등 업종별 규제개혁 우수사례집 발간 : 1,380만원
 - * 업종 5개 부문× 138만원 × 2회 = 1,380만원
 - 산업, 에너지 규제비용분석 및 규제개혁방안 연구용역 : 17,600만원
 - 신설·강화 및 폐지·완화 규제 비용, 편익분석 등 : 17,600만원
 - * 연 주요법령 제개정 235건× 비용분석율 30%× 건당 250만원 = 17,600만원

□ 지원 필요성

- 변화관리 교육-학습-연구체계 구축으로 변화-쇄신의 체질화 유도 및 조직구성원들의 창의역량 강화, 즐거운 일터 분위기 조성
- 유관기관 역량 강화를 통한 안정적 공공서비스 제공 및 성과향상을 위해 유관기관 임·직원에 대한 평가 및 교육 필요
 - 공공기관은 에너지 수급이나 안전관리 업무 및 무역 지원 등을 수행하면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 일자리 창출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필요성 지속 제기
 - 규제로 인한 기업의 부담 총량을 일정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 **엄밀한 규제비용·편익 분석**을 위해 전문 연구기관에 의한 분석 필요
 - * 신설·강화 규제 도입시 그 비용에 상응하는 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
 - 규제개선 과정에 국민·기업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규제개혁 신문고**’ 운영 중 → 답변 내용 중 ‘**소명**’* 대상 과제는 부처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에 **상정·논의**하도록 되어있어 개최횟수 확대 필요
 - * 부처의 중장기검토 및 불수용 답변 중 국조실에서 일부를 선정하여 소관 1급 명의로 소명 의무 부과
 - 규제개혁의 수요자인 기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규제 개선 외에, **부처간에 연결된 규제를 개선할 필요** → 신산업분야 창업 등 분야별로 부처간 연결규제를 연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감 (B-A)	%
□ 변화관리능력개발	257	400	380	△20	△5
▪ 변화관리 및 혁신교육	110	110	90	△20	△19
▪ 유관기관 역량강화	42	42	42	-	-
▪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105	248	248	-	-
□ 비목	257	400	380	△20	△5
▪ 일반수용비(210-01)	84	77	89	12	16
▪ 임차료(210-07)	3	0.5	0.3	△0.2	△40
▪ 기타운영비(210-16)	18	20	20	-	-
▪ 국내여비(220-01)	5	5	5	-	-
▪ 국외여비(220-02)	17	17	14	△3	△18
▪ 사업추진비(240-01)	22	22	22	-	-
▪ 연구개발비(250-00)	92	245	0	△245	△100
▪ 정책연구비(260-02)	0	0	218	218	100
▪ 포상금등(310-03)	16	12	10	△2	△17

4. 중기재정 소요전망('15~'19)

□ 사업운영 기본방향

- 항상 연구하고 변화에 도전하는 인재 양성
- 국민과 기업을 섬기는 산업통상자원부인의 상을 유지·발전시키고 끊임없는 창조적 혁신을 추구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5	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화관리 및 혁신교육 : 1.1 ▪ 유관기관 역량강화 : 0.42 ▪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 2.48
'16	3.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화관리 및 혁신교육 : 0.9 ▪ 유관기관 역량강화 : 0.42 ▪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 2.48
'17	3.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화관리 및 혁신교육 : 0.9 ▪ 유관기관 역량강화 : 0.42 ▪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 2.48
'18	3.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화관리 및 혁신교육 : 0.9 ▪ 유관기관 역량강화 : 0.42 ▪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 2.48
'19	3.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화관리 및 혁신교육 : 0.9 ▪ 유관기관 역량강화 : 0.42 ▪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 2.48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① 변화관리능력개발 및 유관기관 역량강화 제도 운영

- 변화관리 능력개발 : 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무회의 의결사항
- 유관기관 역량강화 제도 운영 : 공공기관 상임이사 후보자의 역량평가에 대한 규정

②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지원

- 지원근거 : 행정규제기본법,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및 갈등관리 종합계획 수립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변화관리능력개발	1.5	2.1	2.6	4.0	3.8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2.09	-	-	1.5	1.5	-	-
	(2.09)	(-)	(-)	(1.5)	(1.5)	(-)	(-)
'14년	2.57	-	-	2.57	2.20	-	0.37
	(2.57)	(-)	(-)	(2.57)	(2.20)	(-)	(0.37)
'15년	4.00	-	-	4.00	4.00	-	-
	(4.00)	(-)	(-)	(4.00)	(4.00)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구분	주요업무	수행 주체
수행방향 설정	당해연도 수행방향 설정	산업부
▼		
계획 수립	당해연도 계획 수립	산업부
▼		
사업 수행	계획에 따라서 사업 수행	산업부
▼		
실적 관리	수행 결과를 변화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관리	산업부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참고 1 규제비용총량제 개요

□ (개요) 비용기준으로 규제신설시 상응하는 기존규제 폐지(Cost-in, Cost-out) (비용원칙, 등급 예외 방식)

* 시행에 긴급을 요하거나 국민안전 등의 규제는 적용 예외

○ (비용개념) 규제 신설·강화로 인해 기업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직접비용'*을 총량 관리기준으로 운영 (간접비용 제외)

* (직접비용) 직업훈련비, 장비구입, 전문가 자문비 등 피규제자에게 직접 발생하는 비용 vs (간접비용) 생산성 하락, 소비자 선택폭 감소 등 직접적 화폐지출을 동반하지 않는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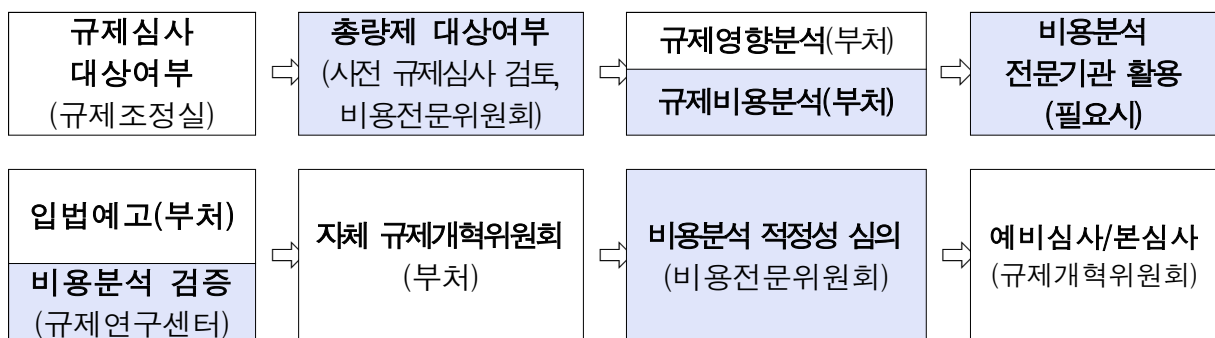
- (규제비용 적립제) 추가 절감한 규제비용은 이를 적립, 향후 규제신설시 사용 가능토록 관리

○ (운영체계) 입법예고 전 총량제 적용 대상 여부를 국조실과 사전 협의하고 규제개혁위원회(전문위원회, 본회의)에서 비용 적정성 심사

- (전문위원회 및 규제비용분석기구) 규개위 산하에 전문위원회(위원장 규제 조정실장)를 설치·운영하고, 규제비용분석 독립기구를 통해 비용분석 검증

○ (실시계획) 주요 규제부처 및 자발적 참여부처는 '14.7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16.상반기부터는 전부처 전면실시(계획)

* 총 7개 부처: 우리부, 국토부, 환경부, 문체부, 농림부, 해수부, 중기청



* 신설·강화규제 비용분석시 폐지·완화 규제에 대한 비용분석을 동시에 실시

참고 2 규제 비용·편익분석 연구용역 추진방향

□ 배경 및 필요성

- '14.7.1일부터 우리부 등 7개 부처*가 규제비용총량제**를 시범적으로 실시중 ('15.下부터 전 부처 실시 예정)

*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문체부, 농림부, 중기청

** 신설·강화 규제에 대해서 그 비용만큼 기존규제를 폐지하는 제도로 비용 분석은 경제학적, 회계학적 지식이 요구되어 시범사업 부처는 외부용역 수행

- 多數 신설·강화 규제가 총량제 적용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며, 적용 대상 신설규제 및 퇴출규제에 대해서는 엄밀한 비용·편익 분석 필요

* 총량제 적용 예외: 국제조약·협약, 위기 대응, 생명·안전·질서유지, 요금·수수료·과태료 관련 규제

□ 연구용역 방안

- ① 산업부 규제특성을 고려하여 기업에 대한 규제 비용·편익 분석*

* '16년도 규제 신설, 강화 비용분석 뿐만아니라 규제 비용적립(Banking)에 대비하여 주요한 규제의 폐지, 완화에 대해서도 비용분석 수행

- ② 산업·에너지 분야의 현장규제 발굴, 개선

* 산업·에너지 관련업종에 대해 경영프로세스상의 규제를 발굴하고, 발굴된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및 규제개혁 방안 검토

□ 소요예산

- 각 분석별 250만원 소요 가정할 때 연간 1.7억원 소요

* 250만원×68건(법령 제정 건수 225건 중 30%에 대해서 비용분석실시) = 1.7억원

참고 3 규제개혁신문고 및 소명제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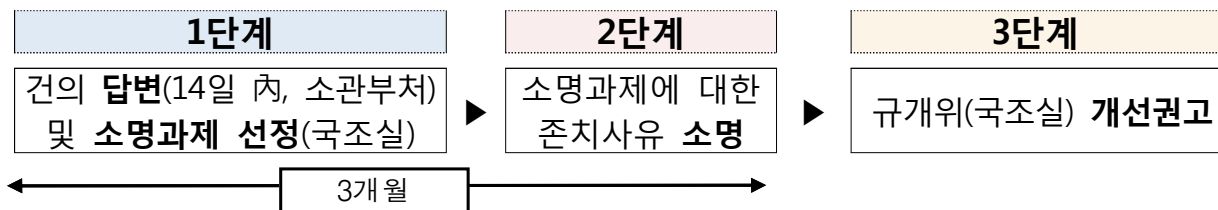
◆ 규제개혁신문고* 신설 후 VIP께서 해당 사이트를 매일 방문, 부처 답변 내용을 수시 확인 중

* 청와대 홈페이지 및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

※ (참고) 규제건의 처리상황은 VIP 및 총리 일일보고 中이며, BH 민정수석실에서도 모니터링 中

◆ 각 부처 규제신문고 답변 중 국조실이 소명 대상을 선정하면 자체 규제분석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1급 명의로 소명

< 규제신문고 건의처리 흐름도 >



○ (1단계) 국조실은 각 부처 규제신문고 답변*(중장기검토, 불수용) 중 부처의 전향적 검토가 미진하다고 판단한 과제에 대해서 소명 의무 부여

* 산업부 현황(5.12일 기준 답변완료 139건): (수용) 29건, (중장기) 52, (불수용) 58

- 5.12일 1차 소명 대상 과제를 선정해서 각 부처로 통보(우리부 20건/소부처 120건)

○ (2단계) 각 실·국에서는 자체 규제 분석*을 수행, 그 -결과의 타당성을 자체규제심사위원회에서 심사받고 최종소명**(1급 명의)

* B/C 분석, 규제목적 달성도 및 외국사례 등 검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 규제존치, 규제개선, 대안제시 중 택1

※ (소명기한) 과제 최초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원칙

* 3.21일에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과제는 6.21일까지 소명 필요

○ (3단계) 소명 결과 규제존치 건의 중 일부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후 필요시 개선권고 실시(기관장은 권고 이행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

국내외 교육훈련(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 감 (B-A)	%
국내외교육훈련	177	202	140	△62	△30.6

* 사업코드 : 21-11-0-110-116-7100-7137-402

* 담당자 : 운영지원과장(강경성), 인사팀장(정재환, 044-203-5060), 주무관(한혜원,5065)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3년~계속 * 조직개편으로 舊 외통부로부터 국내외 교육훈련비 일부 이체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2. 사업목적

- 산업통상인력 양성을 위한 장기국외훈련비 지원
- 동 사업의 경우 정부조직개편('13.3.23)으로 舊 외통부로부터 국외 훈련생 및 훈련비를 이체 받은 바, 既 교육과전 중인 훈련생 및 신규훈련생 교육훈련비 지급
- 현 정부의 국정과제의 일환인 “FTA 네트워크 등 경제협력 역량 강화” 추진을 위해 통상전문인력 양성은 지속적 추진 및 확대 필요

3. '16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국내외 교육훈련

- (계속지원) 既 국외 훈련생 지원 : 미국에서 훈련중인 4인에 대한 체재비, 학자금 등으로 **136백만원**
 - 산출내역(환율 1달러=1,100원)*
 - * 2015년도 1분기 평균환율을 기준으로 작성
 - ① A, B사무관(14년 국외훈련생 2명) = 31,794,400원
 - * 2,463불*4개월(체제비+의료비)+2,000불(항공료)+600불(귀임료)= 12,352불*2명=28,904불
 - ② C, D사무관('15년 국외훈련생 2명) = 104,623,200원
 - * 2,463불*12개월(체제비+의료비)+18,000불(학자금) = 47,556불*2명 = 95,112불
- (예비비) 환율변동 및 가족 항공료 **4백만원**

□ 지원 필요성

- 현 정부의 국정과제의 일환인 “FTA 네트워크 등 경제협력 역량 강화” 추진을 위해 통상전문인력 양성은 지속적 추진 및 확대 필요
- 정부조직개편 후('13.3월) 산업부가 통상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상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
 - 舊 외통부가 외교·통상인력양성을 위해 국외훈련과정을 운영한 점을 감안시, 정부조직개편으로 통상기능이 부여된 산업부도 양질의 통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외훈련 과정을 계속적으로 운영 필요
 - 舊 외통부 국외훈련 과정에 선정되어 既 국외훈련중인 훈련생('15년 기준 5명)들을 위한 훈련비 당연 지원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감 (B-A)	%
☐ 국내외교육훈련	176	202	140	△62	30.7
☐ 비목	176	202	140	△62	30.7
▪ 국제화여비	114	120	116	△4	3.3
▪ 보상금	62	82	24	△58	70.7

4. 중기재정 소요전망('15~'19)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양질의 통상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장기국외훈련 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5	2.02	▪ 계속지원 1.24억원(3명), 신규지원 0.73억원(2명), 예비비 0.05억원
'16	1.40	▪ 계속지원 1.36억원(4명), 예비비 0.04억원
'17	0.54	▪ 계속지원 0.54억원(2명)
'18	-	-
'19	-	-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파견근무)①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국가적 사업의 공동 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에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공무원임용령 제41조(파견근무)①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4호. 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무원 교육훈련법,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공무원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

○ 추진경위

- 조직개편('13.3.23)으로 舊 외통부의 통상인력 양성을 위한 국외훈련 예산 이체(232백만원)
- '13년 기준 既 훈련생 6인, 신규 훈련생 1인, '14년 기준 既 훈련생 4인, 신규 훈련생 2인을 위한 국외훈련 과정 운영
- 현 정부의 국정과제의 일환인 “FTA 네트워크 등 경제협력 역량 강화” 추진 및 향후 지속적으로 양질의 산업통상인력 양성을 위해 인사 혁신처와 국외연수 신규훈련생 TO확보를 위한 협의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국내외 교육훈련비	-	232	213	202	1.4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3년도 당초 계획대비 학자금, 어학연수비 등 지원 금액이 다소 줄어듬에 따른 불용 발생

* 지원상한액(USD18,000이내/1년)을 기준으로 예산을 수립하며 지출금액은 내역이 명확한 입학금, 등록금 등에 한해 실비 지급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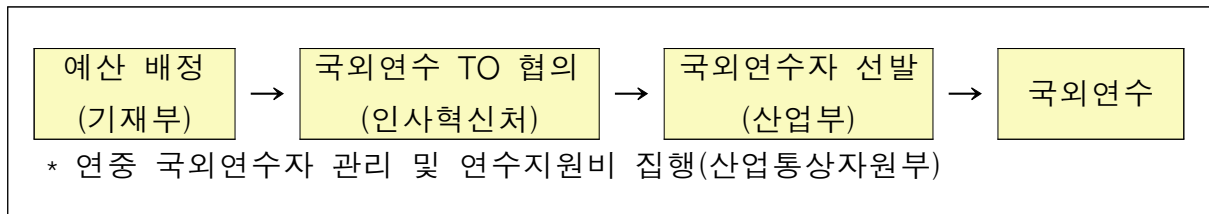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232			232	1.83		0.49
	()	()	()	()	()	()	()
'14년	213			213	1.76		0.37
	()	()	()	()	()	()	()
'15년	202			202	1.51*		0.05(잠정)
	()	()	()	()	()	()	()

* 12월말 약 0.46억원 집행 예정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없음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계속, 정보화)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 감 (B-A)	%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545	531	531	-	-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6 - 7100 - 7142

* 담당자 : 정책기획관(김정환), 정보보호담당관(전병근, 044-203-5590), 사무관(한대건, 5594)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8년 ~ 계속
총사업비	-
사업규모	-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호담당관실

2. 사업목적

- 최근 사이버공격이 지속적으로 지능화·정교화됨에 따라 보안관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신 보안관계 솔루션을 발굴하여 구축

3. '16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사이버안전시스템 고도화 구축

- 대용량화되는 보안이벤트를 신속하게 수집하여 공격자 의도를 사전 예측·예방할 수 있도록 대용량이벤트 연관분석시스템 구축
- 대용량 이벤트 수집·분석을 위한 장비 도입
- 악성코드 침투과정·악성행위 등을 분석하기 위해 실제 상황과 유사한 해킹·악성코드 모의 분석환경 구축

(단위 : 백만원)

품 명	수 량	금 액
☐ 대용량 이벤트 분석시스템	1	240
☐ 대용량 수집서버, 검색서버	4	80
☐ 악성코드 분석 모의 네트워크 구축	1	211
합 계		531

☐ 지원 필요성

- 한수원 사이버위기를 계기로 에너지·산업·무역 등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보안체제를 강화하고 사이버공격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
- '09년 7.7DDoS, '10년 스틱스넷, '11년 3.4DDoS 및 금융 해킹사고, '12년 샤문, '13년 3.20 및 6.25 사이버테러, '14년 개인정보유출에 이어 원전 해킹사고 대란 등 사이버위협 현실화
- 이에, 진화하는 해킹기법에 신속·정확하게 방어하기 위해서는 최신 보안솔루션을 발굴하는 등 시스템 고도화 구축이 필수적임
- 또한, 카드사 등 금융기관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대란과 같은 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링 강화 등 특단의 개선조치가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감 (B-A)	%
☐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545	531	531	-	-
▪ 사이버안전시스템 고도화 구축	545	531	531	-	-
☐ 비목	545	531	531	-	-
▪ 기타유형자산(430)	545	531	531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5~'19)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에너지·무역·산업 등 실물경제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산하 기관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이버안전을 확보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
 - 사이버전쟁(사이버 미사일)로 평가되기도 하는 사이버공격을 사전 탐지·방어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
- 최근 지능화·전문화되는 사이버공격으로부터 보안관제 효율을 극대화하고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시스템 고도화 구축
 - 365일 24시간 실시간 보안관제, 침해사고 대응, 취약점분석을 위한 최신 보안솔루션을 발굴·구축하여 사이버안전센터의 기능 강화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5	5.3	▪ 2015년도 사이버안전시스템 고도화 구축
'16	5.3	▪ 2016년도 사이버안전시스템 고도화 구축
'17	5.3	▪ 2017년도 사이버안전시스템 고도화 구축
'18	5.3	▪ 2018년도 사이버안전시스템 고도화 구축
'19	5.3	▪ 2019년도 사이버안전시스템 고도화 구축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6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
 -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6조제1항 : 금융·통신 등 분야별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 정보공유·분석센터를 구축·운용할 수 있다.

-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2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즉시 대응조치를 할 수 있는 기구(이하 “보안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13조(훈령 제59호)

○ 추진경위

- '06. 05월 :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의장 : 국가정보원장) 의결

- * 기존의 국방, 금융, 행정, 통신, 안보분야 외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5개 핵심 분야(에너지, 교통, 교육, 보건, 외교)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분야별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결정

- '07. 07월 : 산업자원분야 사이버안전센터 설립 계획수립

- '07. 12월 : 지식경제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정(훈령 제128호)

- '08. 08월 : 사이버안전시스템 구축 및 센터 개소(26개 기관)

- '10. 01월 : 지식경제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개정(훈령 제58호)

- '10. 01월 : 사이버안전서비스 대상기관 확대(14개 기관)

- '11. 01월 : 사이버안전서비스 대상기관 확대(7개 기관)

- '12. 02월 : 지식경제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개정(훈령 제91호)

- '12. 06월 : 사이버안전서비스 대상기관 확대(3개 기관)

- '13. 06월 : 정부 조직개편으로 미래부 이관(ETRI, 생기研, NIPA)

- '14. 12월 :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개정(훈령 제59호)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8	7.2	5.5	5.3	5.3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공개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불용 : '13년(5백만원), '14년(4백만원), '15년(3백만원)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7.2			7.2	7.15		0.05
	()	()	()	()	()	()	()
'14년	5.49			5.49	5.45		0.04
	()	()	()	()	()	()	()
'15년	5.31			5.31	5.28		0.03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3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 보통(76.0)
- 평가시기 : 2013년 5월('10년 ~ '12년 사업결과)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외국사례
 - 미국 : 1)NERC에서 2)ES-ISAC 구축·운영
 - 미연방정보국 및 CIA의 사이버 위협정보 제공과 회원사 정보 시스템 보호
 - ※ NERC는 1965년 정전사태 이후 설립되어 북미의 전기시스템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Co-ordinator 역할 수행
 - 미국은 현재 10개 분야에 정보공유분석센터 운영중
 - ※ Banking&finance, Chemicals, Emergency, Food, Government, Info&Comms, Transport, Water, Energy, Other(Real Estate)
- 국내사례
 - 국가(NCSC) 및 분야별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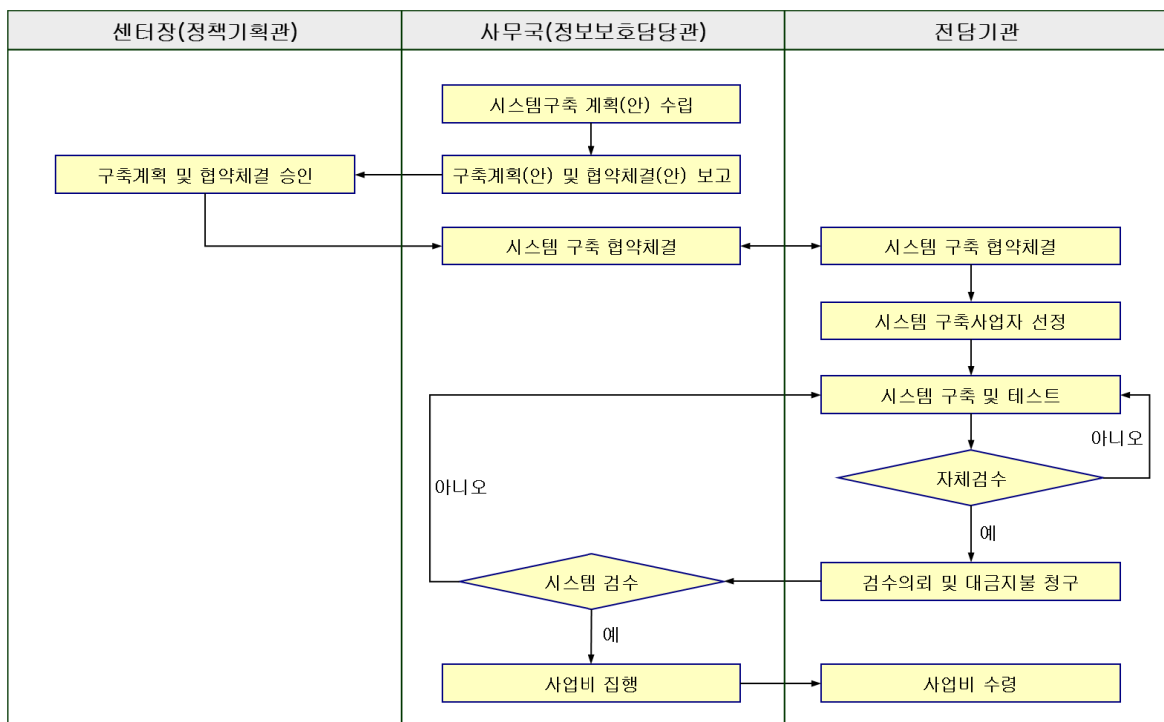
1) NERC(North American Electric Reliability Council): 1965년 정전상태이후 설립되어 전기시스템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정자 역할수행(美 전력ISAC 운영기관)

2) ES-ISAC(Energy-Sector Information Sharing & Analysis Center) : "에너지분야 정보공유분석센터" 에너지 분야 사이버안전관련 정보를 공유·분석하여 최상의 보안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분야별 센터

-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국가사이버안전 정책수립(기획·조정)
- 분야별 사이버안전센터는 해당 소관기관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이버위협 정보수집·분석·전파

※ 행정, 국방, 외교, 국토, 보건, 산업, 교육, 통신, 금융, 재정, 노동, 법무 등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해당 법·시행령·시행규칙 등 조문내용
-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회원기관 현황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6조 제1항(정보공유 · 분석센터)

금융 · 통신 등 분야별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공유 · 분석센터를 구축 · 운영할 수 있다.

1. 취약점 및 침해요인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정보 제공
2.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실시간 정보 · 분석체계 운영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 제1항(보안관제센터의 설치 · 운영)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 · 분석하여 즉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구(이하 "보안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관제센터를 설치 ·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국가정보원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이 설치 ·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참고2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회원기관 현황

□ 사이버안전 대상기관 : 총 47개 기관

분야	기 관 명			기관수
에너지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전KPS,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전력기술, 전기공사협회,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지역난방공사, 광해관리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서부발전, 한전KDN, 한진원자력연료, 원자력문화재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한석탄공사, 지역난방기술, 광해관리공단	26
무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4
산업·R&D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다이텍연구원, 한국표준협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전자부품연구원, 강원랜드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광기술원, 자동차부품연구원,	17
합 계				47

통상정책국

통상정책국 세출예산현황

(백만원, %)

사업명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감 (B-A)	%
<일반회계>					
○통상기반조성및역량강화	832	974	1,125	151	15.5
○다자통상협상추진및글로벌경제협력강화	816	863	803	△160	△16.6
○국제기구분담금	542	721	536	△185	△25.7
○무역투자정책수립운영	197	197	217	20	10.2
소계	2,387	2,755	2,681	△74	△2.7
총계	2,387	2,755	2,681	△74	△2.7

통상 기반조성 및 역량강화(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 감 (B-A)	%
통상 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832	974	1,125	151	15.5

* 사업코드 : 110-113-1900-1932-301

* 담당자 : 통상정책국(박진규), 통상정책총괄과(서덕호, 044-203-5620), 주무관(도화선, 5628)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3년~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해당없음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직접수행)

2. 사업목적

- 산업과 통상의 시너지를 강화하고 국내외 통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통상정책의 추진방향과 시행전략 수립 및 강화
 - 산업과 통상의 연계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통상정책의 추진
 - 산업계, 전문가, 국회 등 다양한 계층과 소통을 활성화하고, 관계부처와 협업을 제도화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통상정책 관련 협의체 운영

- 통상현안에 대한 부처간 정보공유 및 소통강화를 위해 「통상추진위원회 규정」에 따른 통상추진위원회* 운영 (5백만원)

* 종래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이행 협의에 관한 절차 규정」(대통령훈령)의 FTA 추진 위원회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23개 부처로 구성(위원장 : 산업부장관)

** 통상추진위원회(실무회의 개최 포함) : 5백만원(0.5백만원*10회)

- 통상정책 및 교섭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과 업종별 영향분석 등 민관 협업을 위한 「통상산업포럼」* 운영 (10백만원)

* 통상산업포럼 개최 : 6백만원(연2회*3백만원)

** 통상산업포럼 워크숍 개최 : 4백만원(연1회*4백만원)

- 주요국과의 FTA체결 성과를 점검하고 중장기 통상산업 정책의 추진 전략을 모색하는 정례적인 국제컨퍼런스* 개최(120백만원)

* (일시/장소) '14.12.8(월) 10:00~17:40 /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 그랜드볼룸

** (참석자) WTO관계자 및 국외 FTA 전문가, FTA 대상국의 정부측 인사, 한-중 FTA 협상 관련 국내 전문가 및 관련 부처 공무원, TPP 관련 국내외 전문가 등 500여명 참석

- 해외 비관세장벽 사례 평가 및 검토를 통한 비관세장벽 종합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비관세장벽 협의회 운영」* (8백만원)

* 비관세장벽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조직으로서 통상산업포럼內 각 분과별 분과장(업종별 협회 임원급)들로 구성(위원장: 차관보)

** 비관세장벽 협의회 개최(분기별) : 8백만원(연4회*2백만원)

- 한-미FTA, 한-EU FTA 이행점검 및 주요국과의 통상 현안 대응을 위한 협의회 운영(100백만원)

* 한-미FTA, 한-EU FTA 이행점검(분야별 작업반 회의) 및 통상협의회 등 협의회 참석 : 80백만원(10회*평균 2.43백만원*3인=73백만원) + (국내여비 7백만원)

** 통상현안 및 국제규범 관련 법률 자문 : 20백만원

- 통상정책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한 대외홍보 및 홍보물제작(30백만원)

* 광고물제작 2회×5백만원, 매체광고 2회×2개매체×4백만원, 리플렛 등 홍보물제작 2회×2백만원

② 통상절차법의 이행

- 통상절차법 제9조, 11조에 의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9조) 및 영향평가(11조) (330백만원)

* 한-중미, 한-에콰도르 FTA 경제적 영향평가 등(6건×55백만원) : 330백만원

- 통상절차법 이행에 관한 법률적 자문을 위한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의 회의 개최 (22백만원)

* 위원 자문료(30만*30명*2회)+회의개최(2백만원*2회) : 22백만원

- 통상절차법 해석, 개정, 이행에 관한 법률 자문 (20백만원)

③ 통상전략 수립

- 양자간 통상협안 대응전략 및 다자통상협상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330백만원)

* 연구용역 10건×33백만원

④ 해외 비관세장벽 대응 전략 수립

- 주요 통상 상대국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에 민감하고 무역규범에 위배될 소지가 높은 비관세 장벽 사례 발굴 및 다각적 해결방안 모색
- 주요 교역·투자 대상국의 통상 제도 및 환경 조사 연구(30백만원)
- 해외 비관세장벽 사례 발굴, 검토·평가, 대응전략 연구 (12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협약체 운영 및 홍보) 통상협안에 대한 민·관·학 정보공유 및 소통 활성화를 통해 국내외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의 지속적 홍보를 통해 통상정책의 대국민 이해도 제고
- (통상절차법의 이행) 주요국과의 FTA 체결건수 증가로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의무 검토사항이 누적되고 있으므로, 추가적 재원 투입을 통해 기체결된 FTA 및 협상중인 FTA의 성실한 교섭·이행을 지속적 관리·감독
- (통상전략 및 해외 비관세장벽 대응전략 수립) FTA 협상 대상국을 포함하여 다자 및 양자간 통상협상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 및 비관세장벽 등 원활한 통상정책 시행의 걸림돌에 대응하는 통상산업 전략 마련을 통해 국익 극대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감 (B-A)	%
☐ 통상 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836	974	1,125	151	15.5
▪ 통상정책 관련 협약체 운영	149	172	273		
▪ 통상절차법의 이행	287	402	372		
▪ 통상전략수립	150	200	330		
▪ 해외 비관세장벽 대응전략 수립	250	200	150		
☐ 비목	836	974	1125	151	15.5
▪ 일반수용비(210-01)	167	120	235		
▪ 국내여비(220-01)	5	5	7		
▪ 국외업무여비(220-02)	59	89	73		
▪ 정책연구비(260-01)	605	760	81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5~'19)

□ 사업운영 기본방향

- 통상정책 수립 및 조약 체결 관련 국내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통상 추진 지원
- 통상절차법 상 제반 의무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통한 통상조약 체결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이해와 참여 증진
- 주요 협상 등 통상현안과 통상 환경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 하는 통상 전략 수립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5	9.7	▪통상협약체 운영 및 대국민 홍보 1.72, 통상절차법 이행 4.02, 통상 전략수립 2.00, 해외 비관세장벽 대응 전략 수립 2.00
'16	11.3	▪통상협약체 운영 및 대국민 홍보 1.45, 통상절차법 이행 3.32, 통상 전략수립 2.00, 해외 비관세장벽 대응 전략 수립 1.80
'17	9.3	▪통상협약체 운영 및 대국민 홍보 1.83, 통상절차법 이행 3.63, 통상 전략수립 2.00, 해외 비관세장벽 대응 전략 수립 1.80
'18	7.9	▪통상협약체 운영 및 대국민 홍보 1.40, 통상절차법 이행 3.22, 통상 전략수립 1.60, 해외 비관세장벽 대응 전략 수립 1.65
'19	7.6	▪통상협약체 운영 및 대국민 홍보 1.40, 통상절차법 이행 3.22, 통상 전략수립 1.60, 해외 비관세장벽 대응 전략 수립 1.65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및 「자유무역협정체결 및 이행협약에 관한 절차규정*(대통령훈령)」

○ 추진경위

- '03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수행

- * '통상협상전략수립'(구. 지경부)과 '통상외교연구' 및 '다자통상외교추진 및 정책홍보'(구. 외통부)사업간 구조조정을 통해 '통상정책수립 및 정책홍보'와 '다자통상협상추진 및 글로벌 경제협력강화'사업으로 변경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통상기반조성및역량강화	7.8	7.2	7.4	9.7	11.3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2년

- 이월 : 연구개발비 50백만원

- * 하반기 발주 연구용역의 충분한 연구기간 부여를 위해 용역 집행금액을 차년도 이월

- 불용 : 국외여비 19백만원, 연구용역비 7백만원

- * 국외출장비 실비정산 결과 잔액 발생, 연구기관의 실비 정산 결과 미사용금 발생

○ 2013년

- 불용 : 연구개발비 190백만원

- 정부의 세수부족에 따른 경상경비 절감 지침에 따라 139백만원 불용

- * 수용비 61백만원, 여비 18백만원, 연구개발비 60백만원 불용

- 국외여비 실비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및 회의일정 연기에 따라 국외여비 불용

- 이월 : 연구개발비 35백만원

- 연구용역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충분한 시간 부여가 필요

○ 2014년

- 불용 : 연구개발비 2백만원

- 경쟁입찰로 인한 연구용역 계약 차액 발생

- 이월 : 연구개발비 36백만원

- 연구용역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충분한 시간 부여를 위한 부득이한 이월 발생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2년	5.5	0.5	-	6.0	5.7	0.3	0.01
	()	()	()	()	()	()	()
'13년	9.4	0.3	-	9.7	7.5	0.4	1.9
	()	()	()	()	()	()	()
'14년	9.7	0.4	-	8.7	8.3	0.4	0.02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 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비목으로 부처 직접 수행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없음

다자 통상협상 추진 및 글로벌 경제협력 강화(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 감 (B-A)	%
다자 통상협상 추진 및 글로벌 경제협력 강화	816	963	803	△160	△16.6

* 사업코드 : 110-114-1900-1932-401

* 담당자 : 통상정책국장(박진규), 세계무역기구과장(김호철, 044-203-5630), 주무관(이상엽, 5636)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3년~계속 외교부 "다자통상외교 추진 및 정책홍보"(01년~) 중 일부가 '13년부터 이체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
지원조건	-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직접수행)

2. 사업목적

- WTO 정례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범세계적 시장개방 확대와 보편적 무역규범 강화를 추진, 우리의 통상 이익 제고
 - WTO DDA 협상의 새로운 접근방안 구체화 및 복수국간 협상(환경상품협정, 정보통신협정, 서비스협정 등) 공조 강화
 - 다자무역체제로의 수렴을 위한 RTAs 모니터링·분석 추진*
- * (사업배경) 최근 주요국들이 지역무역협정(RTA)에 주력하여 DDA 협상 진전을 위한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 RTAs 분석을 통한 다자무역체제로의 수렴방안 모색
- G20, APEC, OECD, 다보스포럼 등 다자협의체 참여를 통해 아태 지역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세계무역질서에 능동적·적극적인 대응
 - 아·태지역내 주요 회원국들과의 협력 강화, 무역·투자 자유화 및 경제기술협력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

3. '16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WTO 체제 강화와 다자간 협상 진전 추진 (496백만원)

- WTO 분야별 협상 참가 및 각료회의 운영, 회의 결과 책자 및 양허안 분석자료집(111백만원)

* WTO 분야별 협상 참가 및 각료회의 운영

- 분야별 협상 참가 및 각료회의 운영 직접 경비 7개 분야(농업, NAMA, 서비스, 무역원활화, ITA, 규범, SPS/TBT) 51백만원 (1.5백만원*34회)
- WTO 분야별 협상대책반 운영 경비 10백만원 (1백만원*10회)
- 협상 분야별 경과 및 협상타결안 대국민 설명을 위한 세미나·포럼 준비 10백만원

* 회의 결과 책자 및 양허안 분석자료집

- 회의 결과 책자 및 양허안 분석자료집 10백만원 (5백만원*2회)
- 양허안 작성 및 분석, 합의안에 대한 법률 자문 30백만원 (15백만원*2회)

- 분야별 협상대책반, 주한외교단·관계부처 간 업무협약(30백만원)

- * 회의 대응 협의, 분야별 협상대책반, 주한외교단, 관계부처간 업무협약 28백만원 (5만원*10인*7개분야*8회)
- * 협상 분야별 경과 및 협상타결안 설명을 위한 세미나 2백만원 (5만원*40인*1회)

- 다자간 및 복수국 간 협상 준비 지원요원 채용(12백만원)

- WTO 정례회의 참석 등 다자통상체제 논의 참여(343백만원)

- * 고위급 회의, 주요각료회의 계기 통상장관회담 참석 63백만원 (31.5백만원*2회)
- * 분야별(농업, NAMA, 서비스, 무역원활화, ITA, 규범, SPS/TBT) 협상 참석 280백만원 (8백만원*7개분야*5회)

② APEC, OECD, G20, 다보스 포럼 등 지역경제협력 강화 (202백만원)

- APEC 및 OECD 고위급 회의, 실무급 위원회 등 참석(130백만원)

- * APEC 무역투자위원회(CTI, 연3회) 및 고위관리회의(SOM, 연4회) 참석 40백만원
- * 통상장관회의(MRT, 연2회) 및 정상회의(연1회) 참석 45백만원
- * OECD 무역위원회(연 2회), 각료이사회(무역세션, 연 1회) 참석 45백만원

- G20, 다보스 포럼 참석 (62백만원: 31백만원*2회)

- 전문가회의, 회의대비·의견수렴을 위한 관계부처기관 대책회의 및 업무협약 등 (10백만원)

③ 전세계 지역무역협정 모니터링/분석체계 구축 (105백만원)

- 'RTAs 모니터링 및 정보분석센터 운영*, 세미나·공청회 개최 (100백만원)

* 주요국(유럽, 미주 권역 대상) 및 분야별 RTAs 모니터링 및 정보분석 추진 100

- 주요국 동향 파악 및 사전 실무 협의, 전문가 및 유관기관 접촉 협의 (5백만원)

□ 지원 필요성

- WTO 정례회의 및 DDA 협상은 WTO 다자통상 분야의 기본적·필수적 활동인 바, 적극 참여를 통해 다자간 무역협상의 진전 및 보호주의 대응 등을 통한 우리의 통상국익 확보 필요
- G20, APEC, OECD, 다보스포럼 등 다자협의체의 무역투자 자유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사회의 통상관련 주요이슈를 파악하고 우리 입장을 반영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감 (B-A)	%
□ 다자 통상협상 추진 및 글로벌 경제협력 강화	816	963	803	△160	△16.6
▪ WTO체제강화와 다자간 협상 진전 추진	510	496	496	-	-
▪ APEC, OECD, G20 등 지역경제협력 강화	208	202	202	-	-
▪ 전세계 지역무역협정 모니터링/분석 체계 구축	98	105	105	-	-
▪ 중소기업의 GVCs 참여 확대를 위한 APEC 사업	0	160	-	△160	△100
□ 비목	816	963	803	△160	△16.6
▪ 일용임금(110-01)	4	12	12	-	-
▪ 일반수용비(210-01)	82.3	94	215.5	121.5	129
▪ 특근매식비(210-05)	3.5	7.5	9	1.5	20
▪ 임차료(210-07)	0.2	9.5	9.5	-	-
▪ 위탁사업비(210-15)	44.6	100	100	-	-
▪ 국외업무여비(220-02)	272	535	412	△123	△23.0
▪ 사업추진비(240-01)	44.2	45	45	-	-
▪ 정책연구비(260-02)	83	160	-	△160	△10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5~'19)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다자무역체제의 대표적 수혜국으로서 WTO 분야별 협상 진전, 지역 협력 강화를 통해 시장개방 확대와 보편적인 통상규범 강화를 추진하여 우리의 통상이익 제고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5	9.63	▪ WTO다자협상(5.19), APEC 지역경제협력(2.12), RTA분석(1.15), APEC 사업(1.6)
'16	8.47	▪ WTO다자협상(5.2), APEC 지역경제협력(2.12), RTA모니터링/분석(1.15)
'17	9.15	▪ WTO다자협상(5.6), APEC 지역경제협력(2.3), RTA모니터링/분석(1.25)
'18	7.78	▪ WTO다자협상(4.77), APEC 지역경제협력(1.94), RTA모니터링/분석(1.07)
'19	7.46	▪ WTO다자협상(4.58), APEC 지역경제협력(1.86), RTA모니터링/분석(1.02)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정부조직법 제37조에 따라 통상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가 총괄·조정
-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 제3항 제6호 및 제7호 : 세계무역기구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추진경위

- WTO DDA : 2001년 11월 제 4차 WTO 각료회의(카타르 도하)에서 도하 개발아젠다(DDA) 협상출범, 2002년부터 각 분야별 협상 개시
- 2008년 잠정타협안 타결 실패 이후, Early Harvest, 복수국 간 협상 등 다른 접근방법 모색 중으로 '13년 제9차 각료회의 발리패키지 타결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다자 통상협상 추진 및 글로벌 경제협력 강화			6.96	8.46	9.63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2년 해당없음(구 외교통상부 이체('13년)예산)
- 2013년
 - 전용 : DDA대응 등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비목 조정(200백만원, 운영비 →여비), 통상관련 연구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비(30백만원) 및 통상업무 이관에 따른 비밀문서 시스템 구축 위한 운영비 등(38백만원) 전용
 - 이월 : 연구개발비 이월(16.4백만원)로, FTA 환경변화에 따라 연구주제 선택 및 설계 지연 및 연구용역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부여함
 - 불용 : 연구용역 및 위탁사업의 계약금액과 실제 정산금액의 차이로 인한 불용액 발생 및 조직개편 이후 '13년도 하반기 사무보조원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지급 지연(18백만원) 등
- 2014년
 - 전용 : 2014년 「전세계 지역무역협정 모니터링/분석 체계 구축 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주요 분야에 대한 기초 연구 실시를 위해 위탁사업비를 연구개발비로 100백만원 전용*

* 2013 회계연도 결산 국회(산업위) 지적사항 반영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2년	()	()	()	()	()	()	()
'13년	6.96 ()	0 ()	(-0.68) ()	6.28 ()	5.53 ()	0.16 ()	0.59 ()
'14년	8.46 ()	0.16 ()	0 ()	8.62 ()	8.15 ()	0.24 ()	0.2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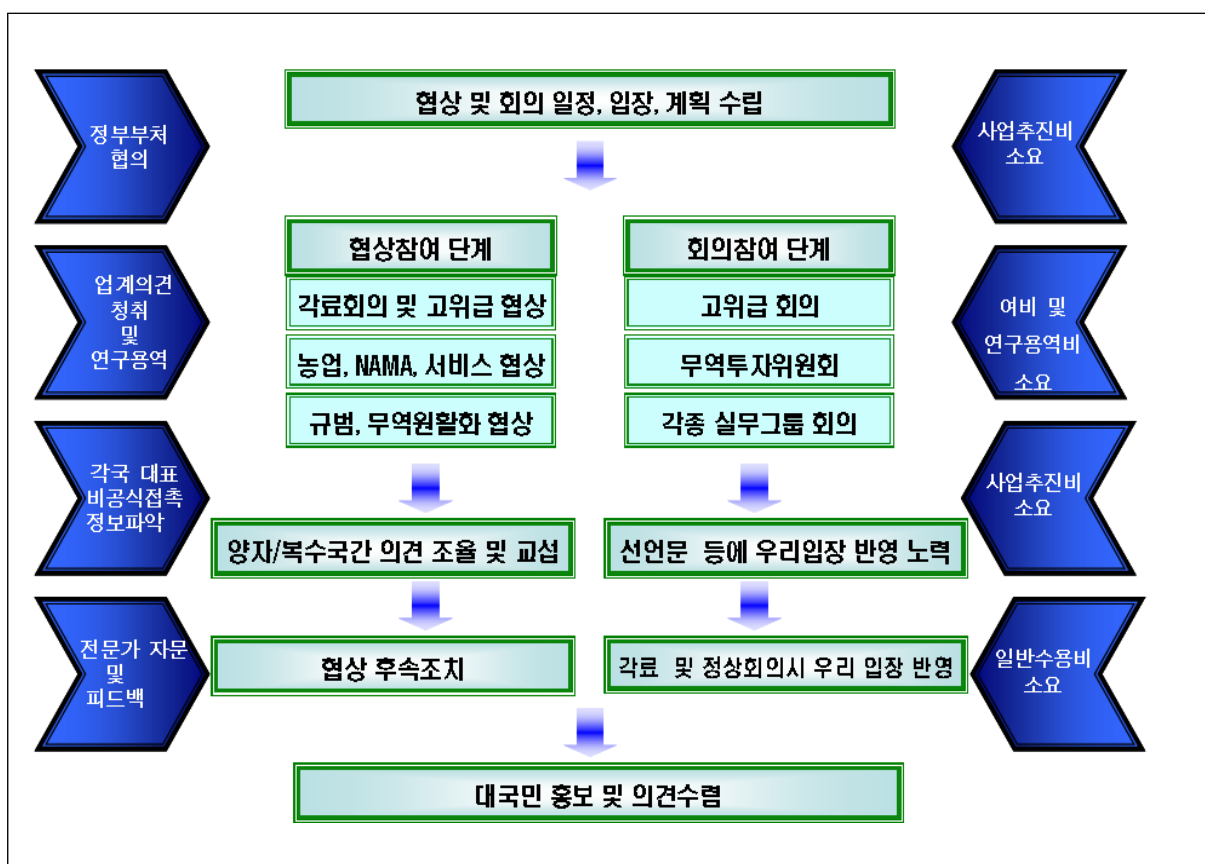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2013 회계연도 결산 국회(산업위) 지적사항

- 지적사항 : “RTA확산에 대한 다자적 대응방안 검토연구”는 위탁사업비가 아닌 연구개발비로 집행이 타당
- 대책 : 향후, 지적사항을 유념하여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14년 RTA 관련 사업 연구개발비로 집행)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국제기구분담금(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 감 (B-A)	%
국제기구분담금	542	721	536	△185	△25.7

* 사업코드 : 110-113-1900-1932-302

* 담당자 : 통상정책국(박진규), 통상정책총괄과(서덕호, 044-203-5620), 주무관(도화선, 5628)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54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해당없음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직접수행)

2. 사업목적

-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 납부를 통한 국제적 위상 제고 및 국제기구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내기업의 이익을 대변

3. '16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국제도량형국 분담금 : 358백만원

- 산출내역 : '16년 예상 분담금 292,342유로 × 기준환율 1,225원/유로
- 292,342유로 = 286,322유로(16년 분담금 총액 11,980,000유로 x 한국 분담 비율 2.39%) + 6,020유로(이란, 북한 등 면제국 할당)

② 국제법정계량기구 분담금 : 69백만원

- 산출내역 : '16년 예상 분담금 56,000유로 × 기준환율 1,225원/유로
- 56,000유로 = 회원국 할당 기준금액 14,000유로 x 조정계수4 (한국은 WB기준 인구수 48백만으로서 Class3에 속함)

③ OECD조선평작업반 분담금 : 109백만원

- 산출내역 : '16년 예상 분담금 89,113유로 × 기준환율 1,225원/유로
- 89,113유로 = OECD 조선평작업반(party 6) 프로그램 총액예상 356,451유로
× 한국 분담비율 25%

□ 지원 필요성

- 국제기구 분담금 적기 납부를 통해 국제기구 활용에 참여하여 국제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내산업에 유리한 교역환경을 조성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감 (B-A)	%
□ 국제기구분담금	542	721	536	△185	△25.7
▪ 국제도량형국	327	502	358	△144	△28.7
▪ 국제법정계량기구	81	80	69	△11	△13.8
▪ OECD 조선평작업반	139	139	109	△30	△21.6
□ 국제기구분담금	542	721	536	△185	△25.7
▪ 국제부담금(340-02)	542	721	536	△185	△25.7

4. 중기재정 소요전망('15~'19)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국제환율 및 각 국제기구의 분담금 규모를 파악하여 조약에 따른 의무 분담금 성실 납부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5	7.21	▪ 국제도량형국(5.02), 국제법정계량기구(0.80), OECD조선평작업반(1.39)
'16	5.36	▪ 국제도량형국(3.58), 국제법정계량기구(0.69), OECD조선평작업반(1.09)
'17	7.21	▪ 국제도량형국(5.02), 국제법정계량기구(0.80), OECD조선평작업반(1.39)
'18	7.21	▪ 국제도량형국(5.02), 국제법정계량기구(0.80), OECD조선평작업반(1.39)
'19	7.21	▪ 국제도량형국(5.02), 국제법정계량기구(0.80), OECD조선평작업반(1.39)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미터협약 및 국제도량형사무소 설치에 관한 협약(조약 제51호)
- 국제법정계량기구 설치협약(조약 제635호)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관한 협약(조약 제1358호)

○ 추진경위

- '06년 6개 국제기구 분담금이 외교부에서 지경부로 이관
- '10년 국제설탕기구 분담금이 외교부에서 지경부로 이관
- '11년 섬유수출개도국기구가 비공식조직으로 전환되어 납부 제외
- '12년 국제면화자문위원회 분담금 ODA예산 분리지침에 따라 분리
- '13년 국제납아연연구그룹 분담금이 의무/재량 분담금 분리지침에 따라 분리
- '13년 국제설탕기구 분담금이 농림부로 이관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국제기구분담금	7.84	7.23	7.37	7.21	5.36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3년 : 집행 시 환율하락으로 국제기구분담금 완납 후 8백만원 불용
- 2014년 : 예산편성대비 유로환율 하락 및 국제도량형국 부담금 조정으로 195백만원 불용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2년	7.84	-	-	7.84	7.84	-	-
	()	()	()	()	()	()	()
'13년	7.23	-	-	7.23	7.15	-	0.08
	()	()	()	()	()	()	()
'14년	7.37	-	-	7.37	5.42	-	1.95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 각 국제기구로부터 분담금 납부 요청 공문 접수 → 해당 분담금 직접 납부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사항 없음

무역투자정책수립운영(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 감 (B-A)	%
무역투자정책수립운영	190	197	217	20	10.2

* 사업코드 : 110-116-7100-1733-302

* 담당자 : 통상정책국(박진규), 통상정책총괄과(서덕호, 044-203-5620), 주무관(도화선, 5628)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해당없음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직접수행)

2. 사업목적

- 국제행사 연설문 작성 및 통역, 외빈면담, 국가간 정례협의체 지원, 외국 공식서한 작성 등 대외 통상업무 지원을 위한 통·번역사 운영
- '13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통상기능의 산업부 이관으로 대외협력 업무 및 통·번역 수요 증가로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4명*의 에디터에 대한 급여 운영(연금지급금, 복리후생비 포함)

* 영어 3명(한국인 2명, 원어민 1명), 중국어 1명

☐ 지원 필요성

- 국제행사 연설문 작성 및 통역, 외빈면담, 국가간 정례협의체 지원, 외국 공식서한 작성 등 대외 통상업무 지원을 위한 통·번역사 운영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감 (B-A)	%
☐ 무역투자정책수립운영	190	197	217	20	10.2
▪ 무역투자정책수립운영	190	197	217	20	10.2
☐ 무역투자정책수립운영	190	197	217	20	10.2
▪ 연구개발비(260-00)	190	197	-	△197	△100
▪ 기타직보수(110-02)			205	205	100
▪ 복리후생비(210-12)			1	1	100
▪ 연금지급금(320-03)			11	11	10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5~'19)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대외 통상업무 지원을 위한 통·번역사를 안정적으로 운영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5	1.97	▪ 에디터 급여 1.97억원
'16	2.17	▪ 에디터 급여 2.17억원
'17	2.26	▪ 에디터 급여 2.26억원
'18	2.41	▪ 에디터 급여 2.41억원
'19	2.58	▪ 에디터 급여 2.58억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해당없음
- 추진경위 : 산업통상자원부 통번역 에디터 운용

* 16년부터 기타직보수로 비목 전환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무역투자정책수립운영	1.57	1.57	2.08	2.08	1.97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재직기간별 급여차로 인해 불용 발생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2년	1.57	-	△0.20	1.37	1.37	-	-
	()	()	()	()	()	()	()
'13년	2.08	-	△0.28	1.80	1.80	-	-
	()	()	()	()	()	()	()
'14년	2.08	-	-	2.08	1.90	-	0.18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 산업통상자원부 에디터 급여운영 예산으로 직접수행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사항 없음

통상협력국

통상협력국 세출예산현황

(백만원, %)

사업명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감 (B-A)	%
<일반회계>					
○양자산업협력	6,965	7,116	7,200	84	1.2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	6,600	8,070	8,790	720	8.9
○한중일통상협력기반구축	30	95	85	△10	△10.5
소계	13,595	15,325	16,126	801	5.2
총계	13,595	15,325	16,126	801	5.2

양자산업협력(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 감 (B-A)	%
양자산업협력	6,965	7,116	7,200	84	1.2

* 사업코드 : 21-11-0-113-11-1900-1931-301

* 담당자 : 통상협력국장(이상진), 통상협력총괄과장(안병화, 044-203-5680), 시기관(이상현, 5681)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93~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
사업시행주체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대한상공회의소 등 국제협력사업 기관

2. 사업목적

☐ 대통령 및 장·차관 등 고위급 해외순방과 상대국 정상 등의 방한 기회를 활용하여 국가별 산업자원협력을 증진

○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 시장개척을 위해 동남아, 중남미 등 자원부국인 신흥개도국과의 정부간 협력채널을 구축·운영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인프라 구축

* 정부간 협력채널 : 81개(산업분야 44, 자원분야 37, '15.1월 기준)

○ 美, 日, EU 등 주요 선진국과의 산업정책 공유 및 통상협력 강화로 거대시장의 안정적 확보

○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시 애로를 겪고 있는 프로젝트 금융에 대한 국가간(국제개발금융기관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 산업자원 협력 기반 조성

3. '16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산업통상협력 네트워크 구축지원(5,940백만원)

- (중앙아·CIS) 중앙아 경제협력위원회 운영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210백만원)

- * 중앙아 지역과의 민관협력채널 유지, 한-카자흐 자원협력위, 한-우즈베크 산업자원협력위, 시장개척단·구매사절단 파견 등

- (동북아)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활성화지원* 및 지역간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680백만원)

- * 중국 중서부지역 투자환경 조사단 파견, 재중 한국기업 경영지원 교류회 개최, 지역 한국상회와 지방정부간 간담회 개최, 중국 통상사절단 파견, 한중 테크노마트 개최, 한중 무역투자정보망 운영 등

- ** 한-대만 산업협력포럼 및 산업별 교류회, 한-광둥성 발전포럼, 한-섬서성 경제협력 포럼 등

- 일본 경제, 산업 조사연구 등을 통한 한-일 협력전략 수립 및 한-일 지역간 협력채널 운영과 교류 활성화 등 한일협력사업(2,477백만원)

- (아 주) 아세안*, 서남아** 지역 경협 네트워크 구축(800백만원)

- * 한-베 공동위, 한-인니 에너지포럼, 한-인니 경협공동위, 한-필 경협공동위, 아세안 관련 경제장관 회의

- ** 서남아 전략개발포럼, 한-인도 CEO포럼, 한-파키스탄 무역투자 공동위, 한-인니 정부간 신규 경협과제 발굴 및 인니진출기업 애로사항 해결 지원

- (중동·아프리카) 중동·아프리카 협력네트워크 구축(1,028백만원)

- * 한-아프리카 산업협력 포럼, 한-중동 민관 경제협력 활성화, 아프리카 협력 채널 구축 및 사절단 파견, 한-이란 비즈니스 포럼 개최 등

- (미 주) 북미, 중남미 산업협력 네트워크 구축(370백만원)

- * 한-중남미 경제협력센터 운영, 한-중남미 비즈니스 포럼, 전문가 협의회 개최, 경제사절단 파견, 미주지역 산업/통상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 운영 등

- (구 주) 구주 산업협력협 네트워크 구축(375백만원)

- * EU내 기업협력네트워크 운영, 구주-대양주 통상정책포럼, 대양주 민관협력 사절단, 한-터키 민간협력 포럼, 한-러 비즈니스다이얼로그 등

② 산업통상협력 기반 구축(910백만원)

- 정상외교 경제활용 포털 운영 및 경제외교 지원(700백만원)

- * 순방관련 정보와 비즈니스 활용 정보를 기업에 DB로 제공, 사업아이디어 제안 사업화지원, 경제외교시 현지 바이어 발굴 및 상담 지원

- MDB와의 해외프로젝트 금융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기업의 해외금융역량강화 지원 및 ADB협력(210백만원)

- * MDB 프로젝트플라자 개최, 해외프로젝트 금융조달 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ADB joint Energy Forum

③ 산업통상협력 정책수립 및 전략수립(350백만원)

- 권역별 양자협력을 위한 전략 및 지원방안 수립(350백만원)

- * 한중산업단지 추진 및 운영방안연구, 중남미 전략산업 진출방안 수립 등

□ 지원 필요성

-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거대 신흥개도국, 미개척 자원부국 선점을 위한 경제협력 확대 필요

- 정상외교 및 고위급 방문과 연계한 에너지자원 개발 등을 포괄하는 패키지형 경제협력 지원

-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및 러시아, 중앙아 등 자원부국과의 산업협력위, 민간 교류행사, 기술교류 등 협력기반 구축 필요

-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시아, 중국 등 지역내 신흥국과의 협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교류사업 추진 지원

- 주요 교역국인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과의 경제적 동반자 관계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경제협력 지원 필요
 - 녹색기술 등 선진기술 공동개발 확대, FTA발효 대비 협력강화
- 통상환경은 단순한 협상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국의 요구 사항과 우리의 필요사항이 연계된 협력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어,
 -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맞춤형 산업자원협력 전략 수립지원 등 산업자원협력 정책기능 지원 강화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감 (B-A)	%
☐ 양자산업협력	6,965	7,116	7,200	84	1.2
▪ 산업통상협력 네트워크 구축지원	5,487	5,861	5,940	79	
▪ 산업통상협력 기반 구축	568	850	910	60	
▪ 산업통상협력 정책수립 및 전략수립	910	405	350	△55	
☐ 비목	6,965	7,116	7,200	84	1.2
▪ 민간경상보조(320-01)	6,965	7,116	6,850	△266	
▪ 정책연구비(260-02)			350	35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5~'19)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신흥시장 선점을 위해 개도국과의 통상협력 비중 확대
 - 국가별 중점 협력분야 프로젝트 발굴 및 관련 사업 지원
 -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등 정부간 협력채널이 중요한 자원부국과의 정부간, 민관합동 협력채널 등 통상인프라 구축에 주력
 - 기술지원, 전문가 교류 등 개발협력 성격의 다양한 양자협력사업 확대로 우리기업 동반진출 유도
- 선진 경제권과는 대외경제협력체 등을 통한 통상현안 해소, 녹색기술 공동연구 등 경제협력 고도화 추진

- 신재생에너지, 첨단기술 등 산업기술 협력 강화, 전문인력 교류 지원 등
-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산업발전정책 체계화, 맞춤형 산업자원협력 전략수립 지원 등 산업자원협력 기반구축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5	71.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홍시장과의 자원확보 등 전략적 협력 : 39.00 ▪ 선진시장과의 산업협력 및 통상협력 고도화 : 27.26 ▪ 전략수립, 금융협력 등 산업자원협력기반구축 : 4.9
'16	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홍시장과의 자원확보 등 전략적 협력 : 39.34 ▪ 선진시장과의 산업협력 및 통상협력 고도화 : 20.06 ▪ 전략수립, 금융협력 등 산업자원협력기반구축 : 12.6
'17	68.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홍시장과의 자원확보 등 전략적 협력 : 30.82 ▪ 선진시장과의 산업협력 및 통상협력 고도화 : 14 ▪ 전략수립, 금융협력 등 산업자원협력기반구축 : 23.63
'18	64.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홍시장과의 자원확보 등 전략적 협력 : 34.85 ▪ 선진시장과의 산업협력 및 통상협력 고도화 : 16 ▪ 전략수립, 금융협력 등 산업자원협력기반구축 : 13.49
'19	6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홍시장과의 자원확보 등 전략적 협력 : 33.63 ▪ 선진시장과의 산업협력 및 통상협력 고도화 : 14 ▪ 전략수립, 금융협력 등 산업자원협력기반구축 : 13.49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대외무역법 제4조(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및 제8조(민간 협력 활동의 지원 등)
- 추진경위
 - '92.1 : 한일정상회담(서울)에서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실천사업 합의

- '93.1 : 한일산업협력 사업 시행
- '93.4 : 한미산업기술협력기금 설치 제안(한미통상장관 회담)
- '96.1 : 산업협력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EU 고위협의회)
- '96.11 : 대통령 동남아 순방 후속사업으로 한아세안산업기술협력 사업 추진
- '98.1 : 한미 · 한EU · 한아세안 산업기술협력사업 시행
- '01.5 : 국무총리 중동순방 후속사업으로 한중동 산업협력 사업 기획
- '03.1 : 한중동산업협력사업 시행
- '04.1 : 한아세안산업협력사업에서 한중협력사업을 분리
- '06.4 :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한-알제리 경제협력 T/F 발족
- '06.5 :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아제르바이잔 경제협력
- '06.10 : “아세안 중소기업 경영인 초청연수 사업”과 “여성 중소기업인 네트워크사업”이 한 · 아세안 FTA 경제협력 공식 사업으로 채택
- '08.5 : 총리 중앙아방문계기 우즈벡, 카자흐, 투르크 등 비즈니스 포럼 개최
- '08.9 : 2008년 한-아프리카 산업협력 포럼 개최
- '08.9 : 러시아 정상방문계기 한러 산업협력 강화
- '08.10 : 한-아세안 FTA 경제협력 작업반 회의 후속조치
- '09.1 : 한 · 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기업의 대한 진출지원 합의
- '09.5 : 대통령 중앙아 순방계기 우즈벡, 카자흐 등 주요 국가별 비즈니스포럼 개최시 상호 보완적인 다양한 협력사업 확대 제의
- '09.6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아세안 협력강화 합의
- '10.12 :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인니 경제개발 마스터 플랜의 주요 파트너로 참여 합의
- '11.5 : 제1차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실무 T/F 회의 개최
- '11.7 : 대통령 아프리카(남아공, DR콩고, 에티오피아) 순방
- '11.8 : 대통령 카자흐, 몽골 순방, 제2차 한-미 산업협력위 개최
- '11.10 : 제2차 한-인니 경협 실무 T/F회의, 한-몽골 자원협력위

- '11.11 : G20 정상회담, APEC 정상회의, ASEAN+3 정상회담
- '11.12 : 제3차 한-콜롬비아 산업협력위, 제5차 한-미얀마 자원협력위
- '12.01 : 한-중 정상회의, 제4차 중남미 경제협력간담회 개최
- '12.02 : 대통령 중동, 중부유럽(터키, 헝가리) 순방, 제4차 한-헝가리 산업협력위, 제1차 한-인니 경제협력위
- '12.04 : 한-베네수엘라 자원협력위
- '12.05 : 한-중-일 정상회의, 한-미얀마 정상회의, 제9차 한-알제리 경험 T/F회의 개최
- '14.06 : VIP 방우 정상회담시 무역역조 해소를 위한 사절단 파견 등 지원 협의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양자산업협력	82	74	69.65	71.16	72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74			74	74		
	()	()	()	()	(100%)	()	()
'14년	69.65			69.65	69.65		
	()	()	()	()	(100%)	()	()
'15년	71.16			71.16	71.16		
	()	()	()	()	(100%)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① 2012년 지적사항

- (예산 예결위 검토보고서)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의 고유사업과 중첩되는 사업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

② 2013년 지적사항

- (결산 산업위 검토보고서) 연간 사업계획을 정상회담·고위급 순방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과극대화를 도모하는 것이 전략적일 것이나, 사업계획수립 당시부터 지역별로 예산을 우선 안배하고 이후 지역별 예산한도 내에서 사업자를 선발하고 있음.
- 따라서 동 사업을 장기협력이 필요한 사업과 단기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 하되, 단기사업은 지역별 안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과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운용하고, 장기협력 필요사업은 사업자 선정 등에서 연속성을 부여하여 성과를 도모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③ 2014년 지적사항

- 지적사항 없음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① 2012년 지적사항 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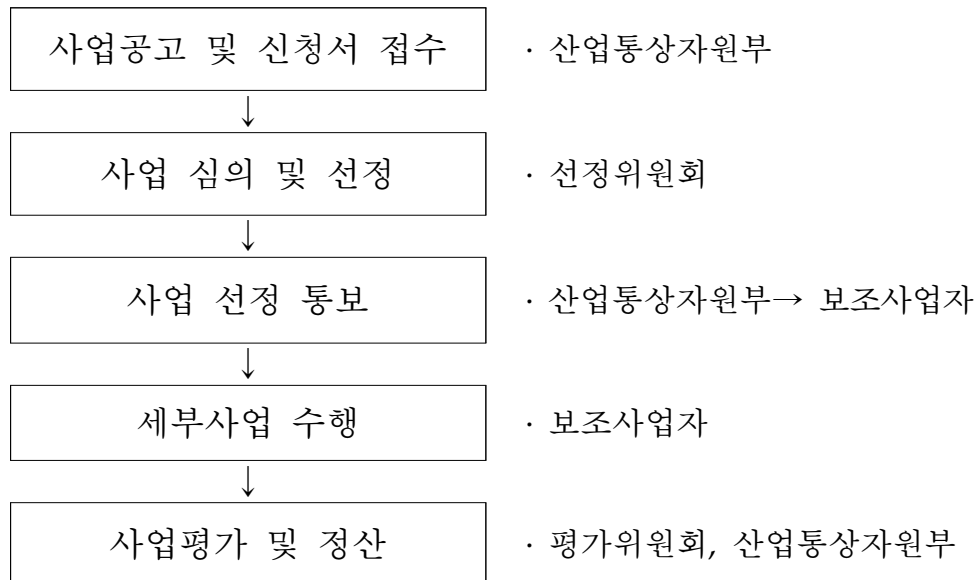
- KOTRA고유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KOTRA가 자체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정부간 또는 민관 공동 협력채널을 통한 협력기반 조성 및 경협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하겠음

② 2013년 지적사항 답변

- 양자산업협력의 효과성을 제고를 위한 전략적 운용방안을 마련·추진하겠음
- 국별 협력과정에서 도출되는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단기사업과 전략적 운용이 필요한 계속사업으로 구분·추진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효과적 운용 방안을 마련·추진하겠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5) 사업추진절차



* 단, 한일 산업협력 사업은 '92년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간 협력사업 전담 기관으로 한일재단, 일한재단을 설립 · 운영하기로 합의한 바, 한일재단이 사업주관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계속, ODA)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4결산	2015예산 (A)	2016예산 (B)	증 감 (B-A)	
					%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	6,600	8,070	8,790	720	8.9

* 사업코드 : 21-11-0-113-11-1900-1931-302

* 담당자 : 통상협력국장(이상진), 통상협력총괄과장(안병화, 044-203-5680), 사무관(이도안, 5022)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2 ~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사업목적

- ☐ 개도국의 산업화 지원요구에 대응하여 ① 정상외교와 연계한 효과적인 산업통상협력 지원, ②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③ 대형 프로젝트 수주 지원 등 미래 먹거리 창출

3. '16년 예산 내용

-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 (650백만원)

- 우리 기업들의 개도국 수출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기술전문가 그룹이 개도국 기업의 생산현장을 방문, 애로기술의 진단·지도
- * 일본은 수처리, 자동차 등 자국의 강점산업을 활용한 기술지도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중앙아(‘14.6) 및 중남미 VIP 순방시(‘15.4), 개도국과 기술지도사업 추진에 합의
- *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아세안 등 기술지도 650(4개국×163백만원)

○ 베트남 농기계 개량보급 (1,600백만원)

- 베트남과의 트랙터 공동 개량연구 및 시범보급을 통해 우리나라 농기계 기업들의 현지진출을 지원
- * 베트남 농기계 개량·보급사업 대상지역인 메콩강 유역은 베트남 벼농사 면적(790ha)의 50% 규모이며, 우리나라 전체 벼농사 면적의 4.9배에 해당
- * 현지 맞춤형 농기계(트랙터) 개량연구 1,030백만원
- * 현지 맞춤형 개량 농기계 시범·보급 570백만원(30백만원×19대)

○ 우즈베크 농기계 R&D센터 지원 (1,100백만원)

- 농기계 부속작업기(파종기 등) 공동연구에 필요한 기자재 및 교육훈련 지원을 통해 국내기업의 현지진출을 지원
- * 우즈베크는 양국 간 정상외교(‘14.6)를 기점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농기계 R&D센터 조성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원과 협력을 확대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우즈베크는 농기계 R&D센터 조성을 통해 대우자동차 제조공장을 롤모델로 하는 농기계 제조공장 투자를 계획
- * 연구개발용 기자재 1,000백만원(설계장비 350백만원, 공작기계 650백만원)
- * 기자재 교육훈련 100백만원(50명×19일×0.105백만원)

○ 에티오피아 섬유 테크노파크 (400백만원)

- 섬유의류 교육 및 시험·인증센터를 구축하여 국내 섬유기업들의 현지진출과 기 진출 국내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
- * 양국 정상 간의 사업추진 합의(‘15.4, 세계 물포럼)와 에티오피아(부지), WB(건물), 한국(기자재 및 교육훈련)간 역할분담 예정
- * 섬유산업 마스터플랜 수립 250백만원
- * 사업 타당성조사 150백만원

○ 콜롬비아 수처리 플랜트 테크노파크 (400백만원)

- 국내 수처리 기술을 활용한 실증형 플랜트 구축을 통해 국내 수처리 플랜트 및 설비 기업의 현지진출 지원
- * 양국 정상 간의 사업추진 합의('15.4, 한-콜롬비아 정상외교)와 콜롬비아 (부지), 산업부(기자재 및 교육훈련 등)간 역할분담 예정
- * 수처리 플랜트 고도화 마스터플랜 수립 250백만원
- * 사업 타당성조사 150백만원

○ 한-우즈벡 섬유 테크노파크 조성 (4,040백만원)

- 우즈벡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국내 섬유 기계·원단제조·의류기업의 생산·수출거점을 구축
- * 한-우즈벡 정상회담('14.6)을 계기로, 그 간의 기술협력('05~'13년)을 확대하여 '섬유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추진에 합의
- * 섬유 테크노파크 건물 중도금(시공/감리) 3,642백만원
- * 초청연수 및 교재제작 100백만원, 연락사무소 운영 등 298백만원

○ 산업개발협력기획 (600백만원)

- 개도국과의 정상외교 후속조치 이행 및 우리기업의 개도국 시장 진출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 발굴·기획
- * 정상외교와 연계한 해외진출 거점 및 프로젝트 수주 연계 실증단지 모델 등 국내기업의 개도국 진출 지원에 필요한 전략적 모델 기획
- * 아세안 등 9개국 대상 산업개발협력기획 600백만원(9개국×67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신흥국가의 고성장에 따라 대형 인프라 사업 수요 증대 등 내수 시장 확대에 신흥국가와의 협력 강화가 중요
- 또한 신흥국들은 앞으로 성장잠재력이 크고 풍부한 자원부존량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새로운 잠재적 시장임에 분명함

- 한편, 신흥국과의 산업자원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국의 요구와 우리의 필요사항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
- 따라서, 원전·플랜트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 지원과 이를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산업자원협력 지원 및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 감 (B-A)	%
☐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	6,600	8,070	8,790	720	8.9
▪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	-	-	650	650	100.0
▪ 베트남 농기계 개량보급	-	590	1,600	1,010	171.2
▪ 우즈베크 농기계 R&D센터 지원	-	-	1,100	1,100	100.0
▪ 에티오피아 섬유테크노파크 조성	-	-	400	400	100.0
▪ 콜롬비아 수처리 플랜트 테크노파크 조성	-	-	400	400	100.0
▪ 우즈베크 섬유 테크노파크 조성	-	2,100	4,040	1,940	92.4
▪ 산업개발협력기획	2,390	600	600	0	0
▪ 베트남 인큐베이터파크 조성	3,400	4,230	-	△4,230	△100.0
▪ 우즈베크 태양광 발전협력	400	200	-	△200	△100.0
▪ 인도네시아 산업경제협력	410	350	-	△350	△100.0
☐ 비목(합계)	6,600	8,070	8,790	720	8.9
○ 민간경상보조(320-01)	2,400	5,970	8,790	2,820	34.9
○ 출연(350-01)	4,200	2,100	-	△2,100	△100.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5~'19)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정상 외교, 양국간 협력 MOU 체결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지원하기로 한 합의한 사항에 대한 충실한 이행
 - 지원사업의 적시성 있는 추진을 통해 상대국 요구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함으로써 효과적인 산업자원협력에 기여
-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사전조사(F/S 등), 관련 기술 지원, 인력 교육 지원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와 연계된 지원 사업 이행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5	80.7	• 중남미 개발협력 지원 : 545백만원 • 중앙아·CIS 개발협력 지원 : 680백만원 • 동북아 개발협력 지원 : 325백만원 • 동남아 개발협력 지원 : 4,250백만원 • 아프리카 개발협력 지원 : 300백만원
'16	90.10	• 산업개발협력(프로젝트): 7,574백만원 • 기술협력: 936백만원 • 사업평가관리: 500백만원
'17	186.3	• 산업개발협력(프로젝트): 16,830백만원 • 기술협력: 1,200백만원 • 사업평가관리: 600백만원
'18	239.3	• 산업개발협력(프로젝트): 21,830백만원 • 기술협력: 1,400백만원 • 사업평가관리: 700백만원
'19	287.0	• 산업개발협력(프로젝트): 26,300백만원 • 기술협력: 1,600백만원 • 사업평가관리: 800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대외무역법 제4조(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및 제8조(민간 협력 활동의 지원 등)

○ 추진경위

- 한국-베트남간 경제협력 패키지 사업으로 '한-베 인큐베이터파크 조성사업' MOU 체결('12.3월 한 지경부 - 베트남 산업무역부)
- 한-인니 인니 경제개발 및 산업별 발전방안 수립지원 정상합의('10.12)
- '한-인니 경제협력 파트너십을 위한 MOU'(지경부-경제조정부) 체결('11.5)
- 몽골 에너지자원협력 지경부(한국)-광업에너지부(몽골) MOU 체결('11.8월 정상 몽골 순방시)
- 한-캄보디아 NPCC와 기술협력 MOU 체결('11.5)
- 한-에티오피아 섬유기술협력 MOU 체결('11.11, 한 지경부- 산업부)
- 우즈벡 태양광 에너지 개발 협력을 위한 MOU 체결('13.12, 산업부-재무부)
- 우즈벡 대외경제부의 섬유기술센터 건립 수요요청서 접수('14.05)
- 베트남 MOIT의 농업기계화 지원사업 수요요청서 접수('14.05)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 산업통상협력 개발지원	50.48	56.00	66.00	80.70	87.9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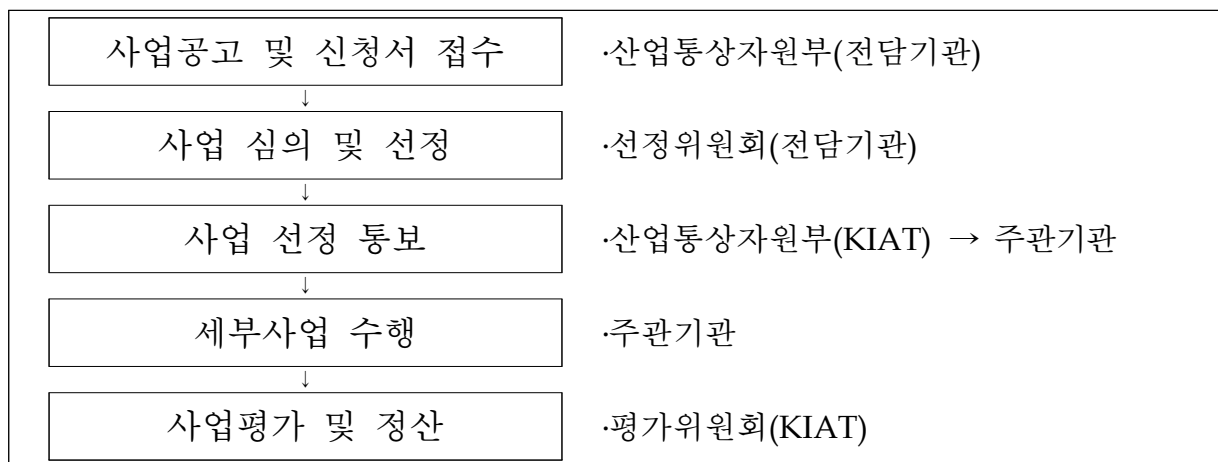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56.00 (56.00)	()	()	56.00 (56.00)	56.00 (100%)	()	()
'14년	66.00 (66.00)	()	()	66.00 (66.00)	66.00 (100%)	()	()
'15년	80.70 (80.70)	()	()	66.00 (66.00)	80.70 (100%)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2015년 정부보조금 사업평가 ; 정상추진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한중일 통상협력기반구축(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 감 (B-A)	%
한중일 통상협력 기반구축	30	95	85	△10	△10.5

* 사업코드 : 21-11-0-110-113-1900-1932-402

* 담당자 : 통상협력국장(이상진), 동북아통상과장(이재근, 044-203-5690), 사무관(박근형, 5692)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0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사업규모	해당사항 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2. 사업목적

-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한중일 통상장관회의' 개최를 내실화하여 3국간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나아가 동북아 경제통합의 기반마련

3. '16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한중일 통상협의회 운영·지원 : 85백만원

- 한중일 통상장관회의 및 고위실무자급 협의회, 관련 국내외 정부 간 업무협약 지원 : 45백만원
- 공식회의 결과보고서 작성 및 한중일 협력 합의사항 이행 평가 보고서 작성·발간 : 15백만원
- 관련 회의 및 협의회 참석을 위한 국외여비 : 15백만원
- 업무추진비 : 1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한중일 통상장관회의는 한중일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매년 개최되는 회의체로서, 3국의 산업분야 정책 공조 및 통상 현안 논의
- 특히 한중일 FTA 시대를 맞아, 장관급 회의 뿐만 아니라 고위 실무자급 회의를 활발히 진행하여 통상현안 해결 및 협력사업 진행 필요
- 우리기업들의 中·日 시장진출 애로를 해소하고, 3국간 경제협력으로 중견·중소기업의 동북아 시장 확대진출 지원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감 (B-A)	%
☐ 사업명					
▪ 한중일 통상협력 기반구축	30	95	85	△10	△10.5
☐ 비목					
▪ 운영비(210)	20	63	60	△3	△4.7
▪ 여비(220)	6.7	20	15	△5	△25
▪ 업무추진비(240)	3.3	12	10	△2	△16.6

4. 중기재정 소요전망('15~'19)

□ 사업운영 기본방향

- '한중일 통상장관회의'의 연례 개최
 - '한중일 통상분야 고위실무자 회의' 개최를 통해 통상협력 강화 및 협력사업 발굴 등 역내 경제협력 확대 추진
 - 우리기업의 동북아 시장 개척활동 지원 및 기 진출 기업들에 대한 경제·통상 관련 정보 제공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5	0.95	▪ 한중일 통상협의회 운영지원 및 관련사업 추진
'16	0.84	▪ 한중일 통상협의회 운영지원 및 관련사업 추진
'17	0.91	▪ 한중일 통상협의회 운영지원 및 관련사업 추진
'18	0.77	▪ 한중일 통상협의회 운영지원 및 관련사업 추진
'19	0.77	▪ 한중일 통상협의회 운영지원 및 관련사업 추진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 16조 통상협력국
 - * 10조 각국 및 각 지역 관련 기업의 무역, 해외영업활동 및 기술협력지원
 - * 11조 각국 및 각 지역과의 통상장관 회담 등 통상관련 협의체 운영
 - * 12조 각국 및 각 지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 조정 등

○ 추진경위

- 본 사업은 '98년 통상교섭본부 출범 이후 통상기능 강화를 위해 추진
- '13년 신정부 출범 이후 조직개편으로 통상기능이 산업부로 이관되어, 외교부 통상투자진흥강화 및 현안분쟁관리(1,604백만원) 중 일부 예산 이체
- '02년이후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한중일 통상장관회의 등 협의체 운영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한중일 통상협력 기반구축	-	1.22	1.0	0.95	0.8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3년도 한중일통상협력기반구축 총 예산의 17.2% 집행

- 전용(3백만원) : 통상업무 이관에 따른 시스템 구축
- 불용(98백만원) : 한일 및 중일간 외교관계 악화로 한중일 통상장관회의 미개최에 따른 불용발생, 또한 정부 세수부족에 따라 감사원 지시에 따른 경상경비 절감 등

○ 2014년도 한중일통상협력기반구축 총 예산의 30% 집행

- 불용(70백만원) : 한일 및 중일간 외교관계 악화 지속으로 한중일 통상장관회의 미개최에 따른 불용발생 및 정부 세수부족에 따라 감사원 지시에 따른 경상경비 절감 등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1.22		△0.03	1.19	0.21		0.98
	()	()	()	()	()	()	()
'14년	1			1	0.3		0.7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예산집행이 부진함(국회 산업위 조경태 의원 등)
 - 지난 3년간 이례적인 한-일, 중-일간의 정치관계 악화로 회의가 개최되지 못하여 예산집행이 부진하였으나, '15.10.30일 서울에서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가 개최됨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 해당사항 없음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통상교섭실

통상교섭실 세출예산현황

(백만원, %)

사업명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감 (B-A)	%
<일반회계>					
○자유무역협정체결및후속조치	5,353	5,975	6,565	590	9.9
○통상분쟁대응	841	1,000	2,000	1,000	100

자유무역협정체결및 후속조치(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 감 (B-A)	%
자유무역협정체결및후속조치	5,353	5,975	6,565	590	9.9

* 사업코드 : 21-11-0-110-113-1900-1937-401

* 담당자 : FTA정책관(정승일), FTA정책기획과장(김완기, 044-203-5740), 주무관(김진상, 044-203-5746)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0년~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해당없음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2. 사업목적

- FTA 협상(체결·이행), 정책 수립 등을 통해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해외시장 확보 및 안정적 교역·투자 확대
 - 산업 통상형 FTA 추진을 통해 업계 실질이익 제고 및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
 - 외국인 투자의 유치 확대를 통해 경제 선순환에 기여

3. '16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FTA협상(체결) (3,239백만원)

- “新FTA 추진 전략”(2015.4.30 발표)에 따른 국가별·지역별 FTA 세부 전략의 차질 없는 추진
 - * '15.2.27(금) 대외경제장관회의(경제부총리 주재)에서 정부안 의결, '15.4.29(수) 국회 보고
- 중남미, 유라시아 등 신흥유망시장국가와의 FTA 추진 및 FTA 추진 여건 조성
- TPP 등 메가(Mega) FTA 적극 대응(RCEP, 한중일FTA는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 대응체제 구축 예산 우선 활용)

- 한-칠레('15.4)*, 한-인도('15.5)** 등 기체결된 FTA개정 협상 추진
 - * 한-칠레 이행기구회의를 개최('15.7.22)하여 FTA 개선범위, 향후 개선계획 등을 논의하였으며, 국내절차를 거쳐 협상 개시 추진
 - ** '16.6월이전 협상 개시 합의('15.5.18 발표)

* 협상보조 인건비 (152백만원), 운영비(자료발간, 법률자문 등) (1,079백만원), 여비 (1,075백만원), 업무추진비(111백만원), 정책연구비(325백만원), 임차료(496백만원), 연금지급금(1백만원)

② FTA 이행 및 후속조치 (1,112백만원)

- 52개국과 15건의 FTA 타결('15.12월 기준)에 따른 협정문 이행 및 후속조치
- 한-중 FTA('15.12월), 한-베트남 FTA('15.12월), 한-뉴질랜드('15.12월) 등 기발효 FTA 증가에 따른 각종 후속조치에 적시 대응

* 운영비(자료발간, 법률자문 등)(488백만원), 여비(304백만원), 업무추진비(90백만원), 정책연구비(140백만원), 임차료(90백만원)

③ 한미 FTA의 원활한 이행을 통한 한미간 신경제통상 구축 (865백만원)

- 한-미 통상현안 관련 미 의회 상하원 등 의회자문, 분쟁가능성 검토 등 법률자문, 통상네트워크 구축 비용 요구(\$790,819)

* 경제통상분야 미 의회 자문비: 360백만원 (\$329,127)
 * 이행 관련 분쟁해결 및 법률자문비: 180백만원 (\$164,563)
 * 한미 FTA 활용효과 극대화를 위한 대미경제통상네트워크 구축: 325백만원 (\$297,129)

④ 통상협정 번역 및 검독 (531백만원)

- 3단계 번역검독 시스템에 따라 번역·검독 기능 수행

1단계	⇒	2단계	⇒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 초벌 작성 • 양허표 번역의뢰 등 외부기관의 조력을 거쳐 협상 담당과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한글본 작성 • 협상단, 관계부처 실무 의견을 참조하여 통상법무과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한글본 작성 • 외부기관(법률회사나 관세법인 등)자문 등을 통해 통상법무과가 작성 및 법제처 심사

* 번역전담 인건비(에디터)(127백만원), 번역검독 외부자문(320백만원), 번역관련 시스템 유지보수(10백만원), 여비(60백만원), 업무추진비(14백만원)

⑤ 동아시아 경제통합논의 대응체제구축 (818백만원)

- RCEP 협상 및 한중일 FTA 협상의 차질 없는 추진
- RCEP*(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을 통해 아태지역 무역 및 서비스·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고, 상품·서비스·투자 등 주요 쟁점 관련 조정자 역할을 통해 협상의 진전을 모색하고, 한중일 FTA 및 RCEP 두 협상을 보완해가면서 추진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 ASEAN(주도)+ 6(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 한중일 FTA의 경우 중국시장 내 대일 경쟁력 및 대일 제조업 민감성 등을 고려하여 협상의 진전을 적극적으로 모색

* 운영비(자료발간, 법률자문 등)(320백만원), 여비(96백만원), 업무추진비(80백만원), 정책연구비(100백만원), 임차료(222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전세계적으로 국가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지는 국제적 흐름 추세에 따라 세계 주요국들은 자국의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FTA를 적극 추진 중
- 우리나라 입장에서 FTA 정책 추진은 기존의 해외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므로 반드시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감 (B-A)	%
☐ 자유무역협정체결및후속조치	5,353	5,975	6,565	590	9.9
▪ FTA협상(체결)	2,354	2,567	3,239	672	
▪ FTA이행 및 후속조치	782	996	1,112	116	
▪ 한미FTA의 원활한 이행을 통한 한미간 신경제통상 구축	921	865	865	0	
▪ 통상협정 번역 및 검독	531	531	531	0	
▪ FTA이행분쟁패널대응	115	0	0	0	
▪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대응체제 구축	650	1,016	818	△198	
☐ 비목	5,353	5,975	6,565	590	9.9
▪ 일용임금(110-03)	266	270	45	△225	
▪ 기타직보수(110-02)	-	-	234	234	
▪ 일반수용비(210-01)	2,076	3,070	3,082	12	
▪ 임차료(210-07)	892	808	808	0	
▪ 국내여비(220-01)	25	30	35	5	
▪ 국외업무여비(220-02)	1,420	1,135	1,500	365	
▪ 사업추진비(240-01)	221	317	295	△22	
▪ 연구개발비(260-00)	383	345	0	△345	
▪ 정책연구비(260-02)	-	-	565	565	
▪ 연금지급금(320-03)	-	-	1	1	
▪ 시설비(420-03)	70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5~'19)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동아시아 역내통합을 주도하고, 주요 전략국 및 자원 부국과의 FTA 추진으로 글로벌 FTA 네트워크 강화
 - 한중일 등 주요국과의 FTA를 지속추진하되, 농수산업·중소기업 등 민감 분야 보호
 - RCEP(역내 포괄적 경제협정), TPP(환태평양 자유무역협정) 등 다자간 지역 경제통합 논의 대응
 - 신흥국가와의 FTA 적극 추진 및 중동 등 자원부국 FTA 추진여건 조성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5	59.75	▪ FTA협상체결(25.67), FTA이행 및 후속조치(9.96), 한미FTA의 원활한 이행(8.65), 통상협정 번역 및 검독(5.31),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대응체제 구축(10.16)
'16	65.65	▪ FTA협상체결(32.39), FTA이행 및 후속조치(11.12), 한미FTA의 원활한 이행(8.65), 통상협정 번역 및 검독(5.31),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대응체제 구축(8.18)
'17	61.05	▪ FTA협상체결(27.79), FTA이행 및 후속조치(11.12), 한미FTA의 원활한 이행(8.65), 통상협정 번역 및 검독(5.31),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대응체제 구축(8.18)
'18	57.39	▪ FTA협상체결(24.13), FTA이행 및 후속조치(11.12), 한미FTA의 원활한 이행(8.65), 통상협정 번역 및 검독(5.31),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대응체제 구축(8.18)
'19	54.52	▪ FTA협상체결(21.26), FTA이행 및 후속조치(11.12), 한미FTA의 원활한 이행(8.65), 통상협정 번역 및 검독(5.31),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대응체제 구축(8.18)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통상절차법(2012.7.18 발효)
-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제37조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42호) 제4조 및 제17조

○ 추진경위

- **FTA 추진 정책 시행**
 - 1998년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 정책을 추진기로 결정
 - 2003년 9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된 “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FTA 체결 사업 본격 추진
 - 2004년 3월 FTA체결절차규정(대통령훈령) 제정
 - 2004년 5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FTA 추진로드맵’ 보완
- **FTA 추진 조직 확대**
 - 2004년 10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내에 자유무역협정(FTA)국을 신설기로 결정
 - 2008년 3월 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내 자유무역협정 정책국과 자유무역협정교섭국으로 FTA 추진 조직을 개편

- 2012년 1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정(2012.1.17)
- 통상기능 일원화에 따라 FTA 추진 조직 이관
 - 2013년 3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로 조직 및 예산 이체
 - 2013년 6월 산업과 통상의 연계 강화를 기조로 한 ‘신통상로드맵’ 발표
 - 2013년 9월 FTA체결 및 이행협약에 관한 절차 규정을 전부개정하여 “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발령(2013.9.24)
 - 2015년 4월 ‘신FTA추진전략’ 발표(2015.4.30)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자유무역협정체결및후속조치	55.18억	57.69억	54.49억	59.75억	65.65억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결산표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2년	55.18	1.12	△0.56	55.74	53.85	0.4	1.49
	(55.18)	(1.12)	(△0.56)	(55.74)	(53.85)	(0.4)	(1.49)
'13년	57.69	0.4	1.57	59.66	52.39	3.27	4
	(57.69)	(0.4)	(1.57)	(59.66)	(52.39)	(3.27)	(4)
'14년	54.49	3.27	-	57.76	53.53	1.47	2.76
	(54.49)	(3.27)	(-)	(57.76)	(53.53)	(1.47)	(2.76)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지적사항	대책
(‘12년 국회 외통위 2011년도 결산 검토보고서) · 한미, 한-EU FTA 협정문 번역오류로 인한 전용 과다를 지적 -이에 따른 여타 FTA 추진 지연 문제 언급	(기반영) · 번역검독 시스템 정비·개선 예산을 2012년 예산에 반영 - 협정문 검독을 위해 예기치 않은 검독·자문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예산 전용이 불가피했음을 설명
(‘13년 국회 산업위 2012년도 결산 검토보고서) · 내역사업 예산간 편성 당시 계획과 상이하게 집행된 부분 있음을 지적	(기반영) · 편성 당시 계획과 상이하게 집행된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되, 사업 특성상 협상 상대국 입장, 협상 진행상황 (협상 중단·재개 등), 분쟁발생여부 등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 있음을 설명
(‘14년 국회 산업위 예산심의) · 집행실적이 없는 FTA이행분쟁패널대응 사업을 유사기능사업인 FTA이행및후속 조치사업과 통합할 필요	(기반영) · ‘15년부터 FTA이행및후속조치사업과 FTA 이행분쟁패널대응사업 예산을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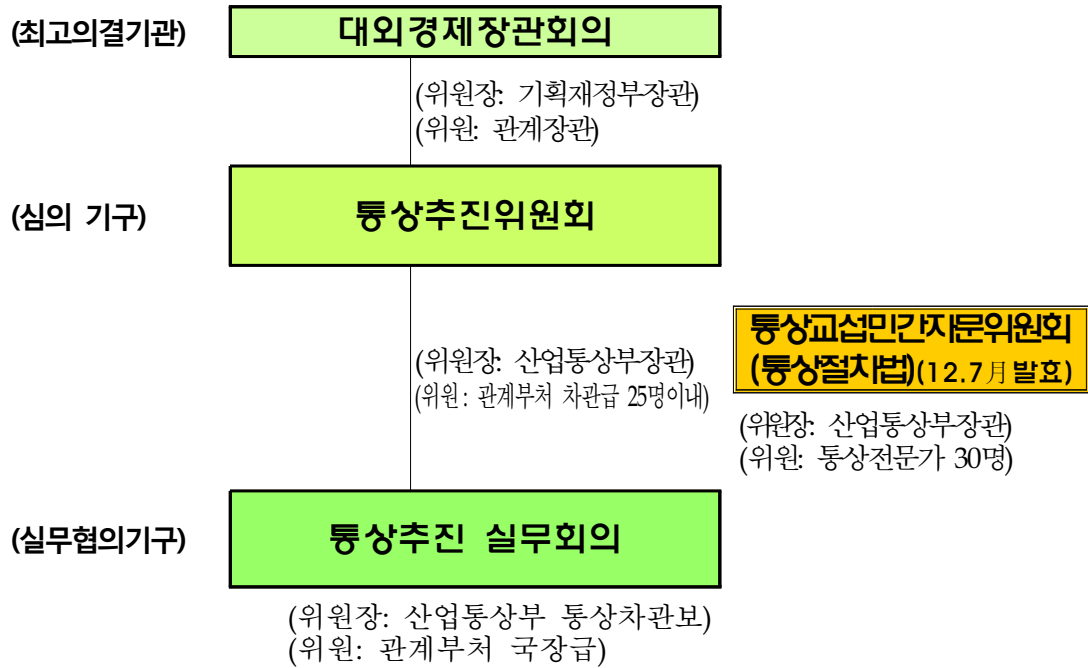
○ 평가결과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에 따른 2015 재정사업자율평가(2012-2014회계년도 평가) 기재부 평가결과, “보통” 등급 판정	
□ 평가결과 (보통)	
사업단계	주요 평가 내용
사업계획	○ 사업목적이 명확하며 타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없음
성과계획	○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연관성이 있으며 목표치 설정근거가 구체적임
관 리	○ 집행실적이 어느정도 개선되었으며, 모니터링을 통한 문제해결이 다소 미흡함
성 과	○ 내·외부지적사항을 개선하고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한 실적이 있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통상분쟁대응(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 감 (B-A)	%
통상분쟁대응	841	1,000	2,000	1,000	100

* 사업코드 : 110-113-1900-1936-401

* 담당자 : FTA정책국(정승일 국장님), 통상법무과(신정훈, 044-203-5770), 주무관(김성은, 5774)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99 ~ 계속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사업규모	해당사항 없음.
지원조건	직접 수행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통상법무과

2. 사업목적

- 교역 상대국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를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제소하고, 우리 정부가 피소될 경우 이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통상 이익 보호
- 우리나라 및 교역 상대국의 경제 및 통상 관련 조치가 WTO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상시 검토하고, 법적 대응조치 강구

3. '16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WTO 당사자 분쟁대응 (1,667백만원)

- 사업내용: 우리나라가 직접 제소·피소국으로 참여하는 WTO 분쟁 대응
- 산출근거
 - 자문료: 1,580백만원

- 출장비: 75백만원
- 법률전문가, 외국 정부인사, 업계인사와의 업무협약: 12백만원

② 기타분쟁대응 (278백만원)

- 사업내용: △우리나라가 당사자가 아닌 주요 WTO 분쟁에 3자로 참여, 우리입장 개선 및 우리 통상이익 보호 및 △기타 통상이슈 관련 법률자문 및 그 외 분쟁 가능성이 있는 사안들에 대한 모니터링
- 산출근거
 - 법률자문료: 194백만원
 - 출장비: 76백만원
 - 법률전문가, 외국 정부인사, 업계인사와의 업무협약: 8백만원

③ WTO/FTA 모의재판 (40백만원)

- 사업내용: 통상분쟁에 대한 관심제고 및 분쟁대응 역량 강화의 목적으로 '10년부터 (사)국제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WTO/FTA 모의재판대회 개최
- 산출근거
 - 수당, 사례비(채점위원, 자문위원, 패널리스트 등): 7백만원
 - 상패, 상금 및 소모품 구입: 13백만원
 - 리셉션, 오만찬, 도시락: 20백만원

④ 통상분쟁 대응기반 마련 (15백만원)

- 사업내용: 통상법 포럼 개최를 통한 전문가들간 통상현안 협의 및 네트워크 구축
- 산출근거: 통상법 포럼 개최 2.5백만원 x 6회

□ 지원 필요성

(WTO 당사자분쟁 대응 / 기타 분쟁대응)

- 통상분쟁의 경우 정치적·사회적으로 민감할 뿐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이익에도 직접 연관되어 있는 사안인바, 적극적·효과적 대응이 긴요
 - 최근 우리나라산 제품들에 대한 무역구제조치가 증가하는 추세로, 향후 2-3년간 우리나라와 관련된 WTO/FTA 분쟁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

(WTO/FTA 분쟁 모의재판)

- WTO/FTA 분쟁 모의재판은 통상분야 젊은 인재들을 발굴, '통상분쟁 대응의 국산화'에 중장기적으로 기여하고, 통상 이슈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데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감 (B-A)	%
☐ 통상분쟁대응	841	1,000	2,000	1,000	100
▪ WTO 당사자 분쟁대응	462	616	1,667	1,051	170.6
▪ 기타 분쟁대응	305	277	278	1	0
▪ WTO/FTA 모의재판	46	40	40	0	0
▪ 통상분쟁 대응기반 마련	15	15	15	0	0
▪ 통상법 아카데미	22	52	-	△52	△100
☐ 비목	841	1,000	2,000	1,000	100
▪ 일반수용비 (210-01)	698	803	1,797	994	123.8
▪ 국내여비 (220-01)	5	5	7	2	40
▪ 국외여비 (220-02)	100	140	144	4	2.9
▪ 업무추진비 (240-01)	38	52	52	0	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5~'19)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우리나라의 통상 이익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분쟁이 발생시, 적시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

- 국가간 통상분쟁은 무역구제(반덤핑, 상계관세) 관련 분쟁 외에도, 검역·환경·기술규제 등 분쟁이슈의 다양화에 대한 대비도 중요
- 통상법 포럼, 통상법 브라운백 미팅 등 현재 추진중인 행사들의 활성화 및 내실 강화를 통해 관련 전문가 풀을 확보하고, 산업-통상간 연계성을 강화, 중장기적인 통상대응능력 강화
- 통상분야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WTO/ FTA 모의재판 지원 사업 지속 추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5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FTA 분쟁대응 및 통상 관련 법률자문 8.0 ▪ 분쟁대응 관련 출장 1.5 ▪ 통상법 관련 행사 개최 및 분쟁관련 유관인사 접촉 0.5
'16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FTA 분쟁대응 및 통상 관련 법률자문 18.0 ▪ 분쟁대응 관련 출장 1.5 ▪ 통상법 관련 행사 개최 및 분쟁관련 유관인사 접촉 0.5
'17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FTA 분쟁대응 및 통상 관련 법률자문 18.0 ▪ 분쟁대응 관련 출장 1.5 ▪ 통상법 관련 행사 개최 및 분쟁관련 유관인사 접촉 0.5
'18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FTA 분쟁대응 및 통상 관련 법률자문 15.0 ▪ 분쟁대응 관련 출장 1.5 ▪ 통상법 관련 행사 개최 및 분쟁관련 유관인사 접촉 0.5
'19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FTA 분쟁대응 및 통상 관련 법률자문 12.0 ▪ 분쟁대응 관련 출장 1.5 ▪ 통상법 관련 행사 개최 및 분쟁관련 유관인사 접촉 0.5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제37조,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42호) 제4조, 제17조 및 WTO 분쟁해결 절차규정(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 추진경위

- 사업 신설연도: 1999년

※ 1995년 WTO 체제 출범 이후, 회원국간 무역 분쟁은 WTO 분쟁 해결절차 규정(DSU)에 의거, WTO 패널 및 상소기구 절차를 통해 해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통상분쟁대응 사업이 신설됨.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통상분쟁대응	8.5	7.8	8.5	10.0	20.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2년(불용 2.7억원): 우리나라가 제소한 미국 도금강판-반덤핑 조치 분쟁 정지 및 캐나다가 제소한 쇠고기 수입 분쟁의 종료로 일부 불용 발생

○ 2013년(전용 △0.8억원, 불용 0.1억원)

- 전용 △0.8억원: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비밀문서 시스템 구축
- 불용 0.1억원: WTO 분쟁일정 지연 및 기체결 FTA 관련 분쟁 미발생

○ 2014년(불용 0.1억원) : 기재부 지침에 의한 강제불용 및 집행잔액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2년	8.5	-	-	8.5	5.8	-	2.7
	(8.5)	()	()	(8.5)	(5.8)	()	(2.7)
'13년	7.8	-	△0.8	7.0	6.0	-	1.0
	(7.8)	()	(△0.8)	(7.0)	(6.0)	()	(1.0)
'14년	8.5	-	-	8.5	8.4	-	0.1
	(8.5)	()	()	(8.5)	(8.4)	()	(0.1)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각 내역사업의 분류에 부합하도록 업무추진비를 편성·집행할 필요 ('13년 결산 산업위 소위)

(우리부 입장)

- 통상분쟁대응 사업의 업무추진비는 분쟁 동향 파악,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에 소요되며, 이는 직접적인 분쟁대응 보다는 중장기적 분쟁 대응기반을 마련하는 경우가 다수인바, 그간 '통상분쟁 대응기반 마련' 내역사업으로 편성·운영해옴.

※ 통상분쟁대응 사업은 △WTO 당사자 분쟁 대응, △기타분쟁대응, △WTO/FTA 모의재판, △통상분쟁 대응기반 마련 등 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

- 향후에는 보다 직접적으로 분쟁대응과 관련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역 사업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 목을 내역사업별로 나누어 편성 및 집행토록 하겠음(지적사항 수용).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 참고자료(WTO 분쟁해결 절차도) 참조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WTO 분쟁해결 절차도

참고

WTO 분쟁해결 절차도

